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에 미치는 요인 탐색

송 이 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 간 사

아동이 보호 체계로 유입되는 원인 1위는 아동학대입니다. 그만큼 아동학대는 아동 보호 정책의 핵심 사안입니다. 아동학대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이지만, 그동안 훈육이라는 명목, 부모의 체벌권 인정, 아동에 대한 존중 인식 미흡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엄격하게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강력 사건이거나 가시적인 학대가 아닌 한 신고에 주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서울시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발견을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신고자 중에서 신고의무자 직군의 신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고 비신고의무자 신고를 위한 예방, 홍보 정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아동학대 위험군 관리는 아동학대 신고-발견 체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사회복지 인프라와 자원이 풍부하기에 이를 아동학대 신고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빠짐없는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신고율 증가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유관기관 연계를 확장, 강화하면서 기존의 서울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자치구와 경찰을 아우르는 서울시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을 포함한 서울시의 아동 정책이 서울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기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를 위해 자문해주시고 참여해주신 현장과 학계 전문가 분들 그리고 연구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 연구가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서울시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백 미 순

Contents

| | | |
|------------|------------------------------------|----|
| I | 서 론 _ 01 | |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
| | 2. 연구 방법 및 절차 | 7 |
| II |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와 정책 현황 _ 09 | |
| | 1.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추이 | 11 |
| | 2.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전문기관 | 16 |
| | 3. 아동학대 신고 영향요인 | 22 |
| III | 조사 결과 _ 39 | |
| | 1. 조사 개요 | 41 |
| | 2. 조사 결과 | 43 |
| | 3. 소결 | 62 |
| IV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정책 방향 _ 65 | |
| | 1. 아동학대 홍보와 인식개선 | 67 |
| | 2. 아동학대 발견을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 68 |
| | 3. 신고·조사와 공공 사례관리 서비스 | 70 |

Contents

참고문헌 _ 72

Abstract _ 73

부 록 _ 75

| | |
|---|----|
| [부록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유형별 신고건수(2016) | 77 |
| [부록 2] 아동학대 비신고의무자 유형별 신고건수(2016) | 79 |
| [부록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유형별 신고건수(2017) | 81 |
| [부록 4] 아동학대 비신고의무자 유형별 신고건수(2017) | 84 |
| [부록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유형별 신고건수(2018) | 86 |
| [부록 6] 아동학대 비신고의무자 유형별 신고건수(2018) | 87 |
| [부록 7] 신고의무자 규정 법률 개정 | 88 |

표 목차

| | | |
|---------|-------------------------|----|
| 표 II-1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 19 |
| 표 II-2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 20 |
| 표 II-3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별 아동학대 예방사업 | 21 |
| 표 II-4 | 신고접수 경로(전국) | 23 |
| 표 II-5 |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신고접수 | 26 |
| 표 II-6 | 신고의무자 유형(전국) | 32 |
| 표 II-7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변화 | 35 |
| 표 II-8 | 아동학대 비신고자 유형(전국) | 38 |
| 표 III-1 | 면접조사 개요 | 41 |
| 표 III-2 | 면접조사 주요 내용 | 42 |

그림 목차

| | | |
|------------|---|----|
| ■ 그림 I-1 | 아동학대 발견율 | 3 |
| ■ 그림 I-2 | 신고자유형별 전국-서울시 아동학대 신고건수 추세 차이 | 4 |
| ■ 그림 I-3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 5 |
| ■ 그림 I-4 |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 5 |
| ■ 그림 I-5 | 서울시 아동학대사례 유형(2014년~2019년)(중복학대제외) | 6 |
| ■ 그림 II-1 | 전국 아동학대 사례건수 | 12 |
| ■ 그림 II-2 | 전국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건수(중복학대 분류) | 13 |
| ■ 그림 II-3 | 서울시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건수(중복학대 분류) | 14 |
| ■ 그림 II-4 | 전국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건수(중복학대 미분류) | 15 |
| ■ 그림 II-5 | 서울시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건수(중복학대 미분류) | 16 |
| ■ 그림 II-6 | 전국 아동학대 사례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18 |
| ■ 그림 II-7 | 아동학대 사례 업무 진행과정 | 23 |
| ■ 그림 II-8 | 전국·서울·경기 아동학대 신고접수 | 25 |
| ■ 그림 II-9 |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접수 | 25 |
| ■ 그림 II-10 | 피해아동 발견율 | 28 |
| ■ 그림 II-11 |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 수 대비 신고의무자/비신고의무자 분포 (전국) | 30 |
| ■ 그림 II-12 |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 수 대비 신고의무자/비신고의무자 분포 (서울시) | 31 |

연구요약

□ 연구배경 및 목적

- 아동학대 발견율 제고를 위한 신고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
 - 신고접수 건수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증가해왔으며 아동학대사례 건수와 피해아동 발견율도 증가하는 추세
 - 서울시는 2016년 이후 신고건수가 정체 현상을 보이기 시작함. 즉 전국적인 추세에 발맞춰오던 서울시는 2016년 이후 신고건수가 정체 현상을 보이기 시작
 -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초기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
- 아동학대 신고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며 아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돌봄·교육 직군이 포함. 그러나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 아동학대 사례 유형. 실제로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감소한 2017년과 2018년은 방임에 대한 아동학대 사례수가 급격히 감소
 - 아동학대 초기 대응의 주체였던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역 내에서의 역할과 기능.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 및 교육, 사후관리,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담당
-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현황 추이를 신고자 유형, 피해 아동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아동학대 신고율에 미친 영향요인을 탐색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한 신고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향후 공공 아동학대 초기개입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현황 추이를 신고자 유형, 피해 아동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아동학대 신고율에 미친 영향요인을 탐색
- 서울시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신고율을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정책 방향성을 도출

□ 연구 방법

- 아동학대 신고 현황 자료 분석
- 면접조사 개요
 - 조사 시기: 면접조사_2020년 11월~12월
 - 조사 대상:
 - ① 면접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아동복지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종사자 11명
※면접 소요 시간 : 약 1시간 소요
 - ② 전문가 의견조사: 아동학대 전문가 6인

□ 주요 조사 결과

- 면접조사 주요 결과
 - 2016까지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신고율이 2017년부터 서울시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기 시작. 아동학대 신고율이 정체 된다는 것은 아동학대 발견율이 상승하기 어렵다는 점과 연결.
 -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교육과 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향후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신고자가 부담감을 지니게 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 역시 필요함
 - 아동학대 신고가 발견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일선 경찰(지구

대, 수사관, APO)과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함

- 서울시는 시 차원의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돌봄 및 교육 기관 중심의 신고의 무 강화와 시민의 아동학대 인식개선 그리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의견조사 주요 결과

- 서울시의 아동학대 민감도 상승으로 아동학대가 비가시적으로 그 특성이 변화하였고 암수범죄화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됨.
- 서울시가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학대 위기도를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음. 동학대 사례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그리고 각종 중복학대 등으로 구분되는데 최근 정서학대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방임 사례는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례 유형을 자치구별로 면밀히 분석할 경우 서울시 공공 사례관리의 성과와 역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음
-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로 이루어지는 대응 체계 외에 사례관리를 아동학대 관리 체계 안으로 연계하는 방안임. 아동학대가 신고 되기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노출되는 위기도는 상이함

□ 정책개선방안

○ 아동학대 홍보화 인식개선 강화

-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신고 기능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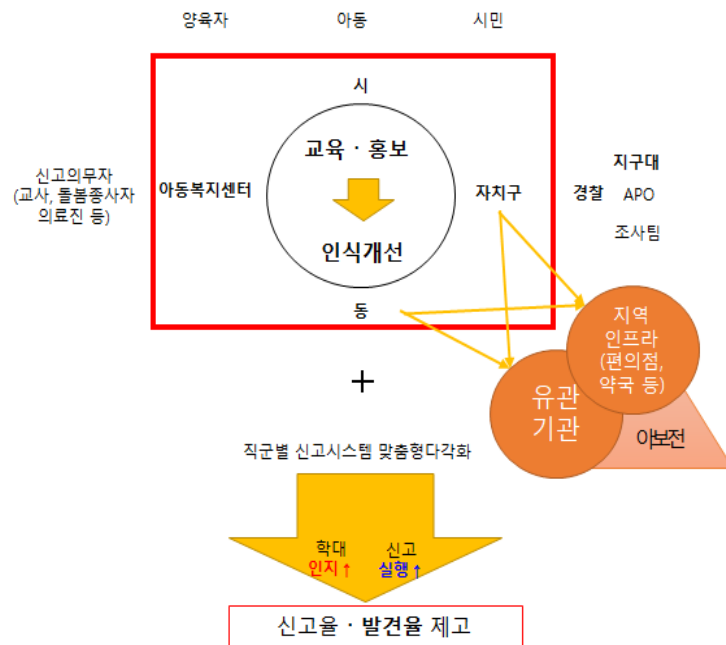
○ 아동학대 발견을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해진 인력과 예산 내에서 사례관리 기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예방교육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아동 연령대와 특성별로 효과적인 발굴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
- 공공 사례관리사와 일선 경찰의 정확한 아동학대 판단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

○ 신고·조사와 공공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 서울시 자치구 단위의 신고율-발견율, 대응체계, 복지인프라 격차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발견율 격차가 존재하는데 만약 서울시의 공공 사례관리가 아동학대 위기도를 낮추는 것에 기여했다면, 찾동 사업과 복지인프라가 특정 자치구에서 위기도 감소에 효과를 보였는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예방은 아동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신고·조사와 공공 사례관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아동학대가 관리될 수 있어야 함
-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신고율 제고와 이를 위한 시민의 민감도 향상 그리고 복지인프라 확대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아동학대 예방 체계 내에서 신고 체계와 복지 체계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

<표>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체계(안)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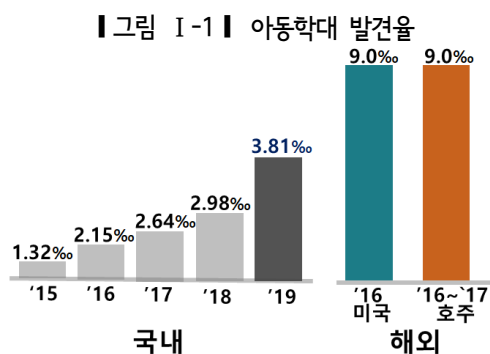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아동학대의 조기 발굴·개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옴에 따라 위기 아동을 조기 발굴하여 개입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학대 발견율¹⁾ 목표치를 2022년까지 5.00%로 설정하였다(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2020년 7월). 국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 당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건수)은 2019년 기준 3.81%로 선진국 대비 절반 이하이며 특히 서울시는 발견율이 1.74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다(경기 3.57, 인천 4.98, 부산 3.88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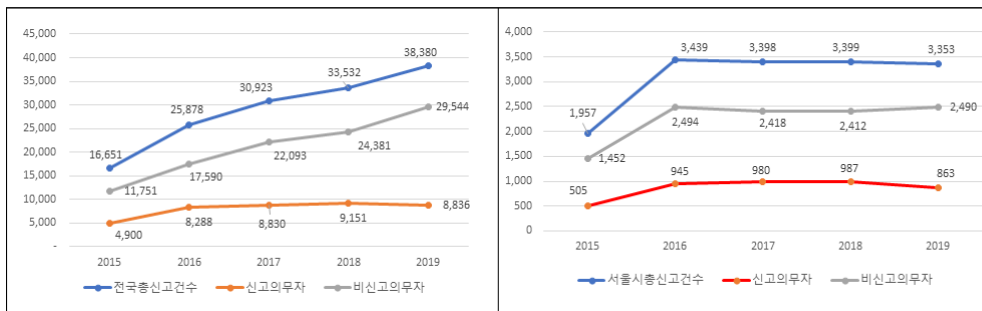


출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2020

1) 발생율이 아닌 발견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발생한 학대피해 중 일부만을 아동보호 체계가 발견할 뿐이라는 학계의 빙산의 일각 모형을 따름(아이스버그 현상)

아동보호 체계내로 아동학대가 유입되기 위해 즉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지정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해 온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²⁾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신고체계를 개편해 왔다(112로 통합).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신고접수 건수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증가해왔으며 아동학대사례 건수와 피해아동 발견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이러한 전국적인 추세에 발맞춰오던 서울시는 2016년 이후 신고건수가 정체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중복학대 분류 기준으로 아동학대 사례 건수 2016년 2,306건, 2017년 2,210건, 2018년 2,178건). 이에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초기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림 I-2 | 신고자유형별 전국-서울시 아동학대 신고건수 추세 차이



출처: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5~2019

아동학대 신고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몇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신고의무자의 신고이다.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며 아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돌봄·교육 직군이 포함되어 있다.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증거 불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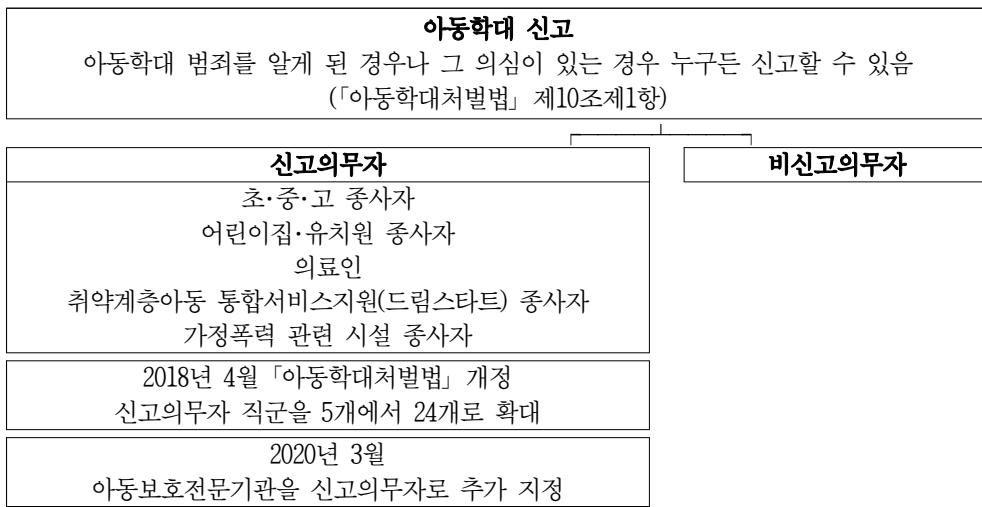
2)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으로 처벌은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정하고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의 관련 사항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 모든 역할을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해 옴

4 |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에 미치는 요인 탐색

분, 학대의 심각도, 신고 기관에 대한 인식, 책임 부담, 학대 종류, 학대 행위자 특성 (조윤정 외, 2013; 김은정, 2016)등이 지적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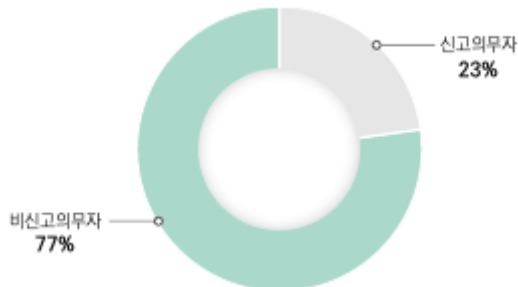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1항)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I-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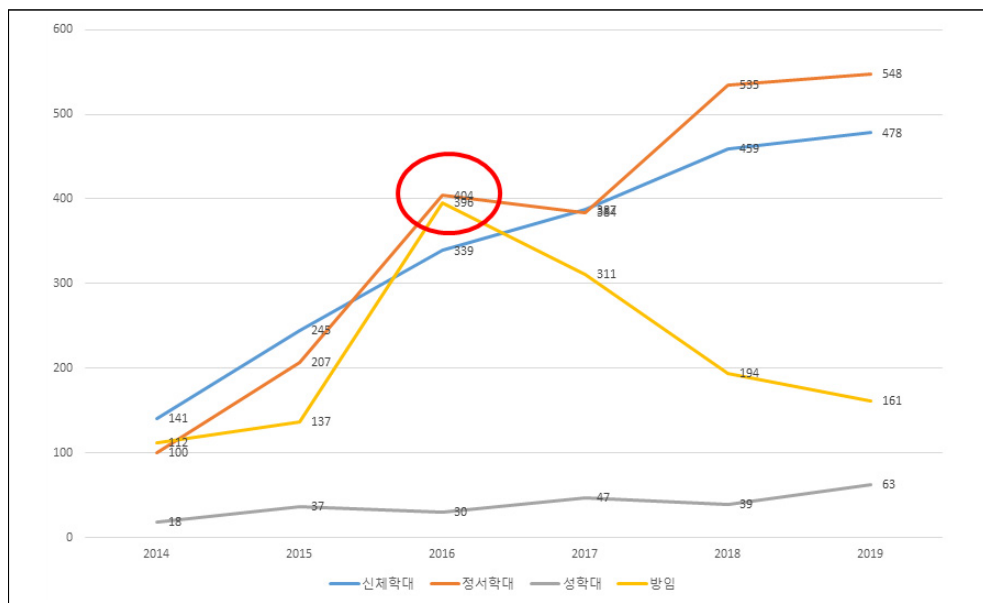
그러나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은 미국('18) 67.3%, 호주('17) 77%, 일본('15) 68%, 한국 ('19) 23.0% 수준이다.

【그림 I-4】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신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은 아동학대 사례 유형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를 통해 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아동학대 사례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아동학대 기준에 못 미칠 수 있고 이 경우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감소한 2017년과 2018년은 방임에 대한 아동학대 사례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 그림 I-5 ■ 서울시 아동학대사례 유형(2014년~2019년)(중복학대제외)



출처: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세 번째로 지역 내에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이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초기 대응의 주체였던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46조에 의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현 아동권리보장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된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사례관리까지 아동학대 업무 전반을 모두 담당해 왔다. 서울시의 경우 2020년 현재 총 9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³⁾ 이러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유관기관과 협업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펼치는

예방사업 즉 교육과 홍보, 기관 연계 등은 신고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현황 추이를 신고자 유형, 피해 아동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아동학대 신고율에 미친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신고율을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정책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초기 사건 조사(사법적 대응)와 이후의 서비스(복지적 대응) 기능을 분리하여 아동학대에 대해 국가 책무성 기반을 강화하는 현시점에서 지금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한 신고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향후 공공 아동학대 초기개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아동학대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문헌과 관련 사례를 검토한다. 셋째,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시기는 2020년 11~12월이며,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전원과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 영향요인과 학대 유형 및 특성별 신고,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방적 기능,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 등으로 구성한다. 또한, 학계 전문가 6명에게 발결율과 신고율 제고 방안과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예방 역할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
- 3) 서울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총 9개가 있음

마지막으로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아동보호, 복지정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연구내용 및 체계, 주요 조사내용,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 영향 요인과 정책 개선 방향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위해 착수 자문회의와 관련 자문을 실시한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 단 계 | | 주요 내용 | | |
|-----|-------------|------------------------------------|---|----------------------------|
| 1단계 | 계 획 설 계 | ▶ 연구목적, 내용, 추진방법 등 계획 수립 | - 연구목적, 내용, 추진방법 등 계획 수립 | 연구방향 설정 및 주요연구내용 도출 |
| | | ▶ 연구방향 및 설계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 | - 학계 전문가, 현장 활동가, 서울시 담당자, 재단 내부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 연구방향 및 설계 적절성, 연구방법 타당성, 연구내용의 적절성 등 | |
| 2단계 | 자 료 분 석 | ▶ 관련 정책 검토 | - 관련 정책 검토를 통한 문제점 파악 | 정책 현황 및 아동학대 신고 현황 분석 |
| | | ▶ 선행연구 검토 | - 시사점 및 개선방향 모색 | |
| 3단계 | 조 사 연 구 | ▶ 조사내용 구성 | - 아동학대 신고 영향요인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 대상 조사 |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 관련 정책적 필요사항 |
| | | ▶ 현장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 조사 | -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 조사 | |
| 4단계 | 정 책 방 안 도 출 | ▶ 정책 방향성 도출 | - 정책 방향성 마련 |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정책 방향성 도출 |
| | | ▶ 추진과제 도출 | - 추진과제 발굴 | |
| 5단계 | 결 과 보 고 | ▶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에 미치는 요인 탐색」 제작 및 발간 | - 연구보고서 작성 |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

II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와 정책 현황

1.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추이
2.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전문기관
3. 아동학대 신고 영향요인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와 정책 현황

1.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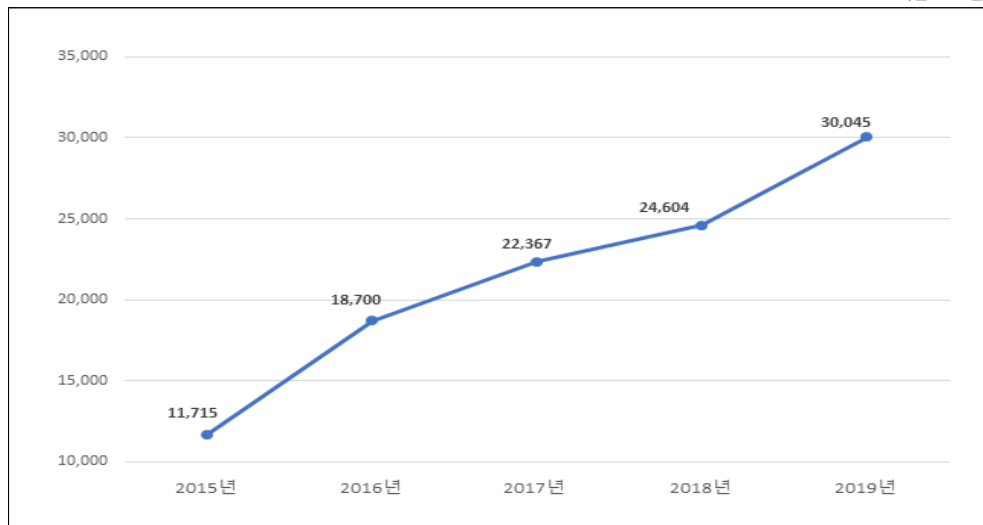
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 또는 박탈당하거나 개인, 제도 및 사회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방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Gil, 1979). 아동학대는 아동의 성장과정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마련된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아동학대의 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강동욱, 2019). 아동학대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발견과 입양, 위탁, 시설보호 등을 통한 보호조치와 가족상담과 치료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요청되고 있다(민소영·김세원·정해린, 2019; 최정일, 2018; 김은정, 2015; 이봉주 외, 2015).

한국에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가족해체, 가족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고혜인·김성봉, 2019a), 2000년도 아동복지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명시하였다. 이후 아동학대에 관련한 통계자료가 수집되기 시작되었고(정선영, 2019), 아동학대는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박순권, 2020). 2019년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30,045건으로 나타났으며(보건복지부, 2019),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학대의 사례건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은 11,715건, 2016년은 18,700건, 2017년은 22,367건, 2018

년은 24,604건, 2019년은 30,045건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9년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전년대비 22%p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9).

■그림 II-1 ■ 전국 아동학대 사례건수

(단위: 건)



자료: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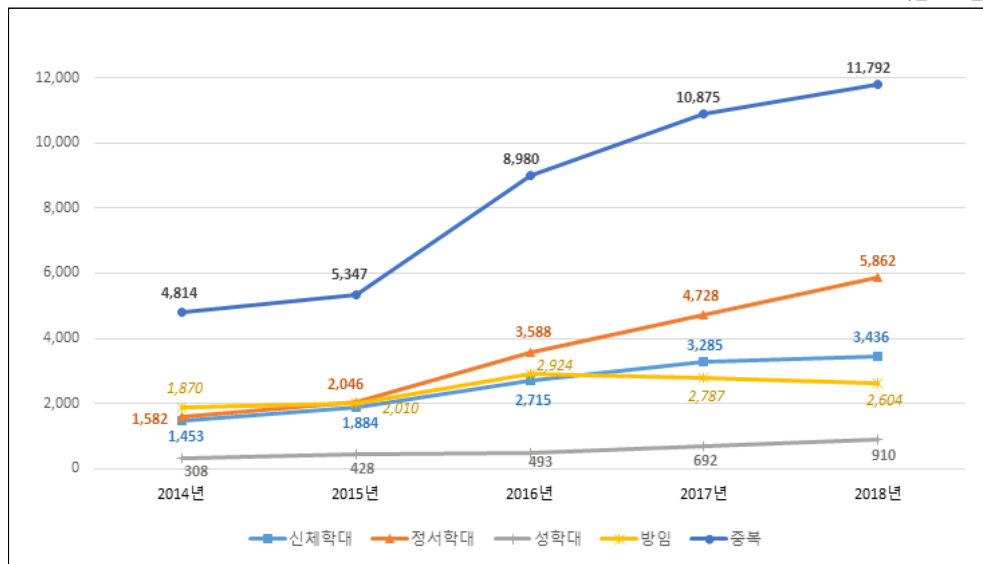
아동학대는 크게 범위와 내용에 따라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는 단일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경험하는 중복학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김세원, 2016). 신체학대는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폭력 및 가혹행위를 뜻하며, 직접적인 신체적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도구 등을 활용한 간접적인 신체 가해 행위도 포함된다. 정서학대는 아동을 상대로 행해지는 언어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등을 의미한다. 성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추행 행위 등을 의미한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물리적 방임, 교육 방임, 의료 방임, 유기가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17).

중복학대를 분류하여 전국의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복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인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중복학대 4,814건, 방임 1,870건, 정서학대 1,582건, 신체학대 1,453건, 성학대 308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은 중복학대, 11,792건, 정서학대 5,862건, 신체학대 3,436건, 방임 2,604건, 성학대 910건의 순으로 나타나 정서학대의 증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학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고 방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까지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그림 Ⅱ-2 Ⅱ 전국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건수(중복학대 분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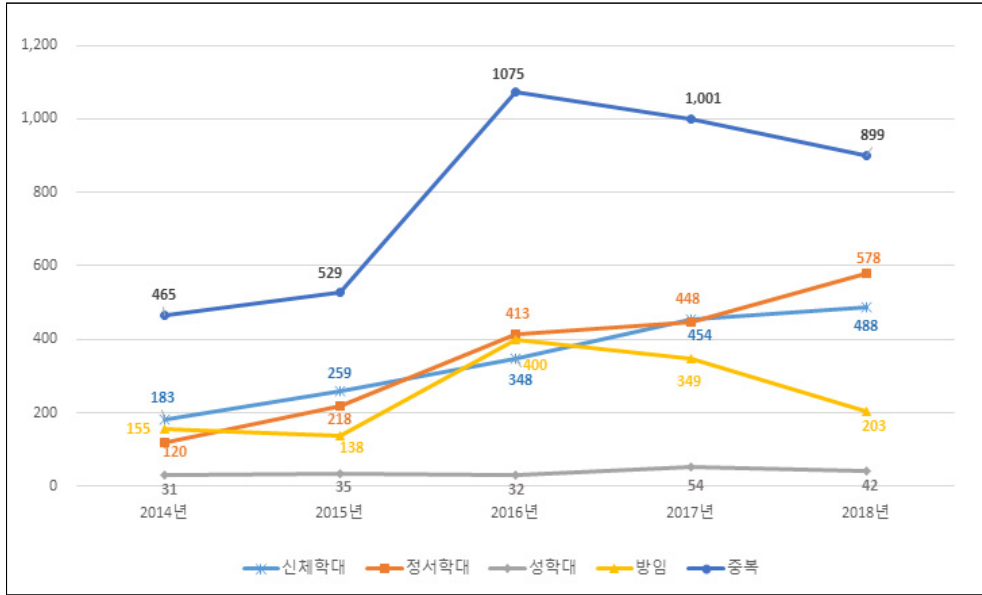
자료: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각 년도(중복학대 포함)

중복학대를 분류한 서울시의 아동학대 사례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적인 추세와는 달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2014년은 중복학대 465건, 신체학대 183건, 방임 155건, 정서학대 120건, 성학대 31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은 정서학대 578건, 신체학대 488건, 방임 203건, 성학대 42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복학대와 방임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신체학대, 정서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3 서울시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건수(중복학대 분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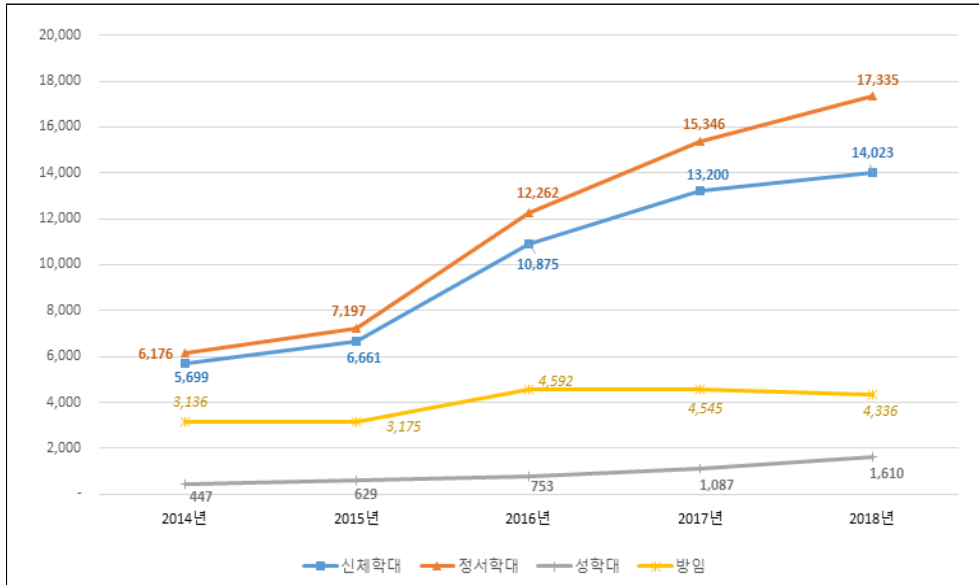


자료: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각 년도(중복학대 포함)

중복학대 미분류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경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서학대와 신체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학대와 신체학대는 2018년은 2014년에 비해 약 2.5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는 2014년 6,176건, 2015년 7,197건, 2016년 12,262건, 2017년 15,346건, 2018년 17,335건으로 나타나 2018년은 2014년에 비해 약 2.5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는 2014년 5,699건, 2015년 6,661건, 2016년 10,875건, 2017년 13,200건, 2018년 14,023건으로 나타났다. 방임은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상승하였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학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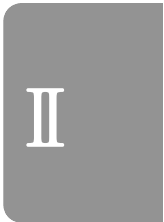
【그림 II-4】 전국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건수(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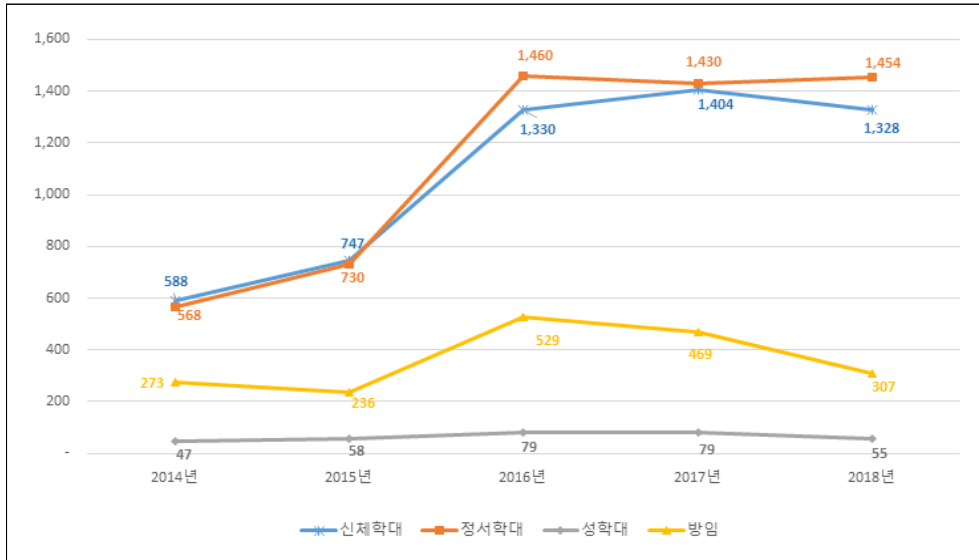
자료: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각 년도

중복학대 미분류 기준으로 서울시의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정서학대와 신체학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신체학대가 정서학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정서학대가 신체학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와 신체학대는 전국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는 달리 서울시는 2016년 이후 증가 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서학대와 신체학대는 2014년에 비해 2018년이 약 2.5배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는 2014년 568건, 2015년 730건, 2016년 1,460건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1,430건으로 소폭 감소하다가 2018년 1,45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는 2014년 588건, 2015년 747건, 2016년 1,330건, 2017년 1,404건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1,382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은 2014년 273건에서 2015년 236건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529건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2017년 469건, 2018년 307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성학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이후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림 II-5】 서울시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건수(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건)



자료: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각 년도

2.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정부는 2000년 학대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및 금지행위,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아동학대 전담기관 등을 규정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의무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인프라 구축이 시작되었다(박순권, 2020). 아동학대의 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들과 중앙 및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강동욱, 2019).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은 아동학대 의심사건을 토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단독 또는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기관 내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들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 크게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의 세 가지 사례유형으로 판단하게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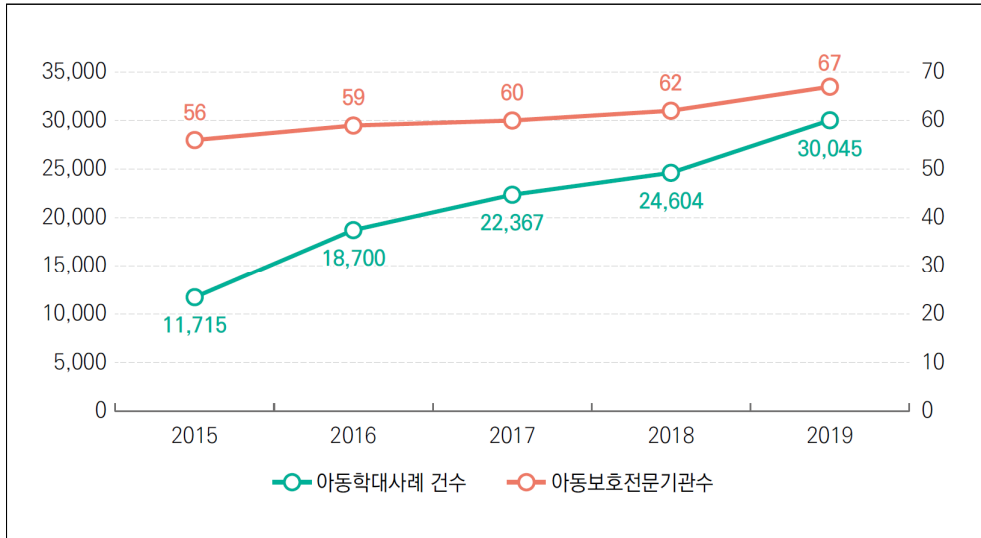
다. 아동학대에 대한 발생 정황이 뚜렷하고 증거 또는 진술이 뒷받침되는 경우는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되고, 아동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조기지원사례로 판단하게 되며, 아동학대와 무관할 경우에는 일반사례로 판단하게 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경우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 학대의 재발생 예방을 위한 서비스 및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다(강지영, 2019).

아동학대 사례 판단은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이며, 아동보호체계 내부로 들어오게 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안전과 복지 및 아동과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학대 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통해 적절한 개입을 함으로써 아동학대 재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강지영, 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5-60가정 이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면 업무량이 배가 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서비스의 지연, 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근속기간이 약 2년 정도로 나타나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의 손실뿐만 아니라 사례관리자 교체로 인한 서비스 대상자의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순권, 2020).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의 아동학대 사례건수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의 추세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의 사례건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는 2015년 11,715건,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 2019년 30,045건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의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8년 대비 약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56개소, 2016년 59개소, 2017년 60개소, 2018년 62개소, 2019년 67개소로 나타났으며, 2019년은 2015년 대비 11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II-6 ■ 전국 아동학대 사례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건, 개)



출처 : 보건복지부, 2019, p.23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과 2017년은 60개가 운영되었고, 2018년은 62개, 2019년은 67개로 증가되었다. 2019년 전국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9개소, 부산,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각각 4개소 등의 순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과 2017년은 8개소가 운영되었으나 2018년에 1개소가 증가하여 총 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II-1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단위: 개소)

| | 2016년 (부록p.268 / 2017년 8월 기준)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서울특별시 | 8 | 8 | 9 | 9 |
| 부산광역시 | 4 | 4 | 4 | 4 |
| 대구광역시 | 3 | 3 | 3 | 3 |
| 인천광역시 | 3 | 3 | 3 | 3 |
| 광주광역시 | 2 | 2 | 2 | 2 |
| 대전광역시 | 1 | 1 | 1 | 2 |
| 울산광역시 | 2 | 2 | 2 | 2 |
| 경기도 | 12 | 12 | 12 | 14 |
| 강원도 | 4 | 4 | 4 | 4 |
| 충청북도 | 3 | 3 | 3 | 3 |
| 충청남도 | 3 | 3 | 3 | 3 |
| 전라북도 | 3 | 3 | 3 | 4 |
| 전라남도 | 3 | 3 | 3 | 4 |
| 경상북도 | 4 | 4 | 4 | 4 |
| 경상남도 | 3 | 3 | 3 | 3 |
| 제주특별자치도 | 2 | 2 | 2 | 2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1 | 1 |
| 합계 | 60 ⁴⁾ | 60 ⁵⁾ | 62 | 67 |

자료: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 자료

한국은 2000년 아동복지법을 토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되었으며, 국내의 아동학대 사건은 민간위탁사업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사례관정,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사후관리,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등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수행해 왔다.(김은정, 2016). 지역아동보호전문

4) 그림 II-6의 그래프에서 2016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59개이나, 추가로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시점과 조사 당시의 시점에 따라 숫자가 다를 수 있음

5) 2017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역시 추가로 설치된 시점과 통계조사를 한 시점에 따라 총 수가 다를 수 있음

문기관의 역할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 현장출동 및 조사업무 수행,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범죄행위 제지 및 아동학대행위자 격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과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 아동보호사건송치시 아동보호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 개진, 임시조치,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위탁 수행 등이 있다.

【표 II-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⁶⁾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상담 ◆ 현장출동 및 조사업무 수행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신청,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등 -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인 선정신청 지원 및 신뢰관계인 등석 등 - 그 외 필요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복지법 제29조) ◆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및 아동학대행위자 격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 ◆ 아동보호사건송치시 아동보호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 개진 ◆ 임시조치,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위탁 수행 ◆ 아동학대예방관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 및 보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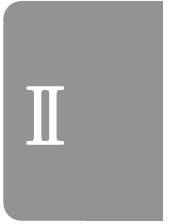
서울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별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은 수행되고 있으며, 각 아동보호전문기관별로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 교육, 아동권리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캠페인, 학대 피해아동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6) 출처: 복지포(<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WellInfoDetail.do?wellInfSno=156>)

【 표 II -3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별 아동학대 예방사업

| 기관명 | | 아동학대 예방사업 |
|--|-----------------------------|--|
|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노원구) | | 신고의무자교육, 일반인교육,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
| 동남권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 신고의무자교육, 일반인교육 |
|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조사) |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교육, 상담 신고의무자교육, 일반인교육, 아동학대예방캠페인(서울 지역총괄), 자치단체 공무원 심화교육, 양육시설 종사자 전문화교육, 상담원 워크숍 |
|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구, 중랑구) | | 신고의무자교육, 아동권리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각종 홍보(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동학대 사례집, 소식지 발간) |
|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 양천구) | | 신고의무자교육, 일반인교육 |
|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 | 신고의무자교육, 아동권리 교육, 학대피해아동지원사업 |
|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 | 신고의무자교육, 일반인교육, 부모교육, 유아&초등 성학 대예방인형극,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예방캠페인 |
|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구, 도봉구) | | 신고의무자교육, 부모 및 교사교육, 초등&유아 인형극, 아동권리 교육 |
|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 | 신고의무자교육, 일반인교육, 아동학대예방홍보 |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 아동학대 예방 카테고리 혹은 교육 및 홍보사업 카테고리 내용 정리



3. 아동학대 신고 영향요인

1) 아동학대 신고 현황

아동학대 신고접수의 주요 경로는 전화이다. 전화를 통한 신고는 범죄신고전화 112,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1577-1391, 보건복지콜센터 129,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그리고 119 안전신고센터가 있다. 112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 신고번호로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신고번호가 112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신고 접수 받은 뒤 현장 경찰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사실 통보 및 동행 요청을 하게 된다. 1577-1391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신고받기 위해 설치한 전화로 24시간 동안 운영되었으나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신고전화는 112로 통합이 되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1577-1391은 폐지되었다(이천현, 2018;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6).

현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통해 아동학대사례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129는 보건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보건복지콜센터 전화번호이며, 보건복지콜센터에 아동학대사례가 신고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에 신고내용을 입력한 후 관할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하게 된다(이천현, 2018).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찰을 통한 신고접수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지구대 경찰의 인식부족, 정보오류 또는 미파악으로 인한 문제 등이 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통보 누락이나 지체가 발생하기도 하며, 시간이 경과된 후 일괄적으로 접수되는 경우도 나타났다(박순권, 2020).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는 전체신고 건수 중 48.8%(16,676건)가 112를 통해 신고접수가 되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한 신고접수 비율은 32.3%(11,038건)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내용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로 접수된 건수가 10,666건, 직접 내방하여 신고한 건수가 363건, 인터넷 접수 건수는 9건으로 나타났다.

【표 II-4】 신고접수 경로(전국)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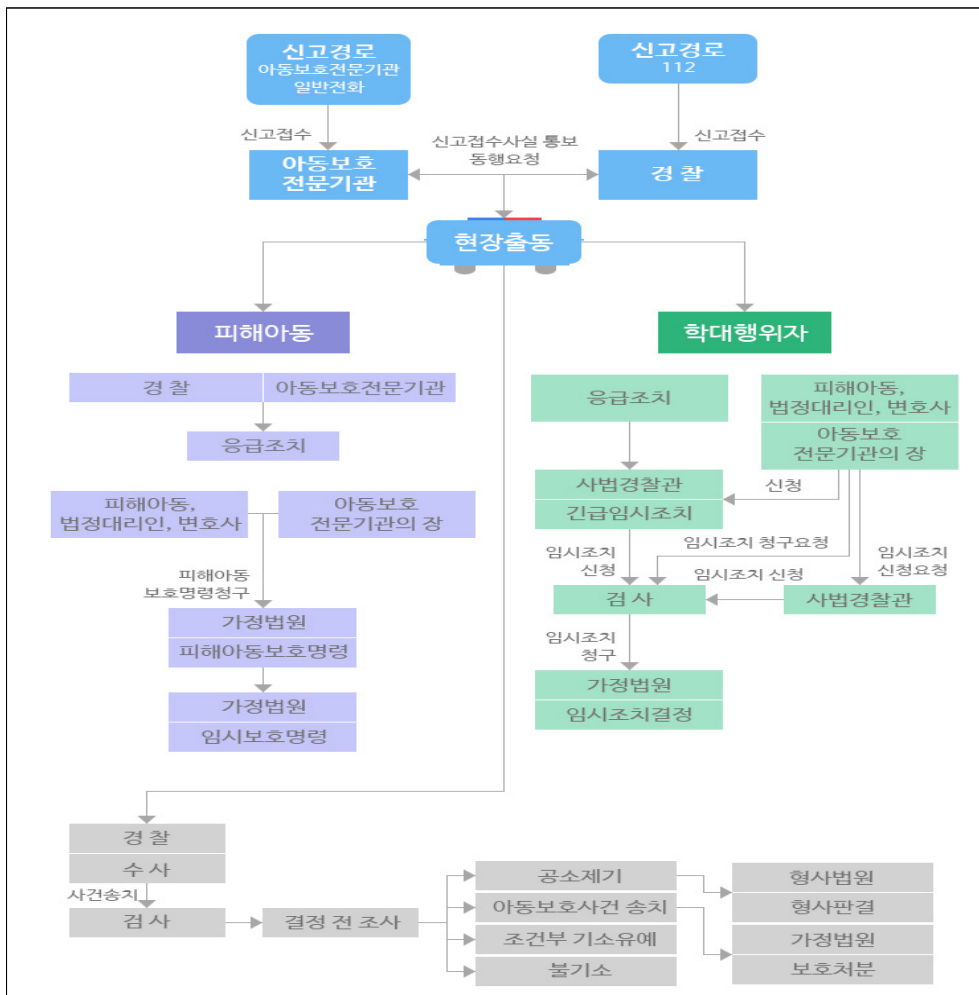
| 아동보호전문기관 | | | | 112 | 119 | 129 | 1366 | 상담원 인지 신고* | 기타** | 계 |
|------------------|------------|--------------|------------------|------------------|-------------|-------------|--------------|-----------------|------------|-------------------|
| 일반전화 | 인터넷 | 내방 | 소계 | | | | | | | |
| 10,666 (31.2) | 9 (0.0) | 363 (1.1) | 11,038 (32.3) | 16,676 (48.8) | 11 (0.0) | 47 (0.1) | 130 (0.4) | 6,258 (18.3) | 9 (0.0) | 34,169 (100.0) |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업무수행 중 아동학대의심사항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경우

** 110(생활민원신고),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의심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등

자료: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p.95

【그림 II-7】 아동학대 사례 업무 진행과정



자료: http://koreal391.go.kr/new/page/work_system.php(아동권리보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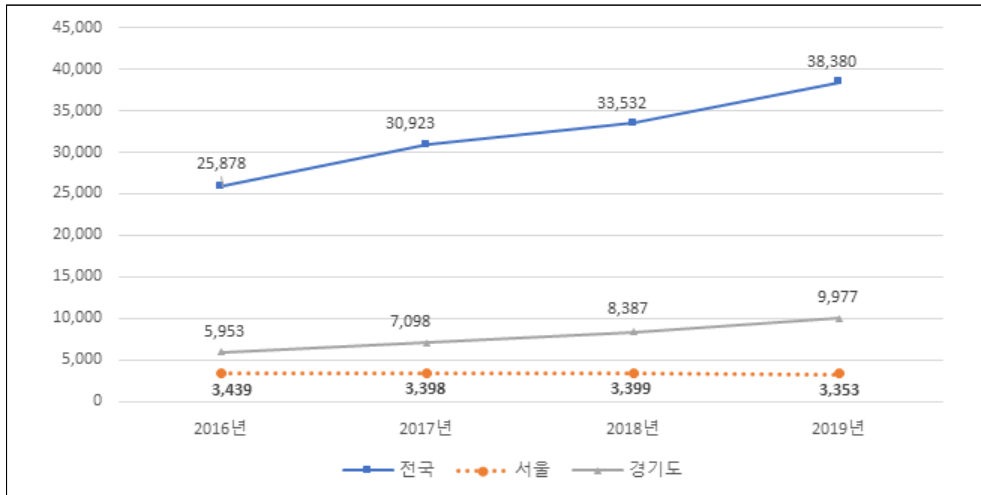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의 신속한 위기개입을 위해 24시간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접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는 아동학대의심사례(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상담, 동일신고, 해외발생사례로 분류되어 접수되고 있다. 아동학대의심사례는 학대로 인한 응급아동의 안전을 위해 현장출동 및 조사를 필요로 하는 응급 아동학대의심사례와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 중에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는 아동학대의심사례에 포함된다. 그리고 일반상담은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문의, 시설보호 문의 등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렵거나 정보부족으로 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이다. 동일신고는 최초로 신고가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에서 동일한 학대피해의심내용으로 다른 신고자를 통해 신고되는 경우이다. 해외발생사례는 국내 국적의 아동이 해외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거나 학대로 인해서 아동학대 관련 기관이 개입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접수되는 사례이다(보건복지부, 2017).

아동학대 신고 중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동학대의심사례이다.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포함한 전국의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25,878건, 2017년 30,923건, 2018년 33,532건, 2019년 38,380건으로 나타나 2019년은 2018년 대비 약 13%p 증가하였다.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비율 중 경기도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3% ~ 26%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다음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들은 10% 이하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다음으로 아동학대의심사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시의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2016년 아동학대의심사례 접수건수는 총 3,429건으로 13.3%를 차지하였으며, 2017년은 3,398건으로 11.0%를 차지하였다. 2018년은 3,399건으로 10.1%를 차지하였고, 2019년은 3,353으로 8.7%를 차지하였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의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세종시의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는 지속적

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8 전국·서울·경기 아동학대 신고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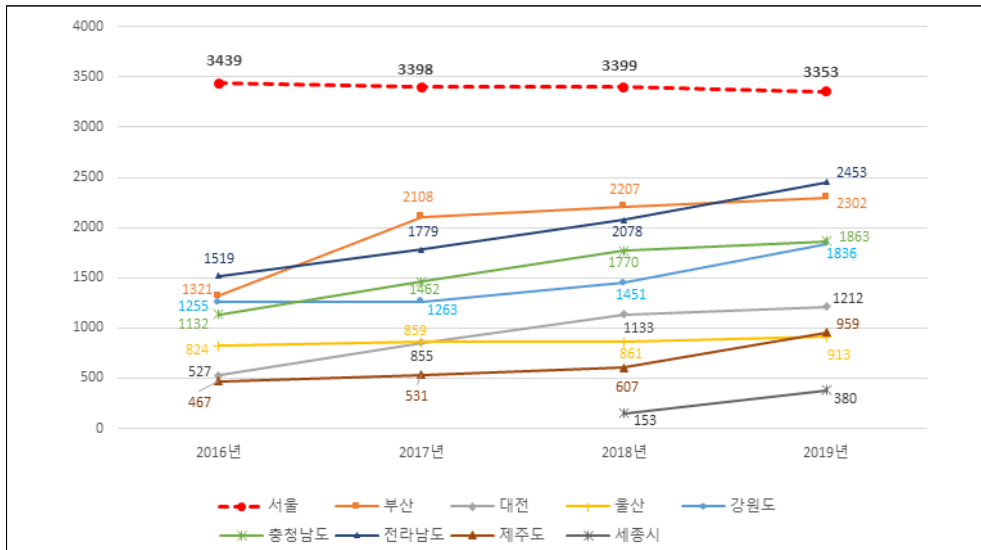
(단위: 건)



자료: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 자료

Ⅱ-9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접수

(단위: 건)



*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아동학대의심사례

자료: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 자료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접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원구 아동전문기관, 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신고접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신고접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신고접수

(단위: 건)

| | 기관명 | 지역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 | | 신고접수 | 신고접수 | 신고접수 |
| 1 |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강남구 | 87 | 68 | 96 |
| | | 강동구 | 84 | 107 | 107 |
| 2 | 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 관악구 | 130 | 84 | 98 |
| | | 동작구 | 48 | 68 | 67 |
| | | 서초구 | 44 | 93 | 81 |
| | | 송파구 | 86 | 118 | 101 |
| | | 소 계 | 479 | 538 | 550 |
| 3 |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 2018년 3월 개관 | - | 259 | 269 |
| 4 |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노원구(2017년) | 216 | - | - |
| | | 중구 | 38 | 24 | 27 |
| | | 성동구 | 59 | 71 | 81 |
| | | 광진구 | 207 | 173 | 151 |
| | | 중랑구 | 178 | 178 | 237 |
| | | 동대문구 | 156 | 158 | 106 |
| | | 소 계 | 854 | 604 | 602 |
| 5 |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 강서구 | 242 | 211 | 188 |
| | | 양천구 | 227 | 196 | 181 |
| | | 소 계 | 469 | 407 | 369 |

| | 기관명 | 지역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 | | 신고접수 | 신고접수 | 신고접수 |
| 6 | 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 은평구 | 312 | 217 | 224 |
| | | 종로구 | 58 | 38 | 54 |
| | | 강북구 | 193 | 166 | 193 |
| | | 소 계 | 563 | 421 | 471 |
| 7 | 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 구로구 | 105 | 152 | 166 |
| | | 금천구 | 111 | 127 | 91 |
| | | 영등포구 | 94 | 129 | 224 |
| | | 소 계 | 310 | 408 | 481 |
| 8 | 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 성북구 | 171 | 167 | 168 |
| | | 도봉구 | 184 | 292 | 175 |
| | | 강북구 | - | - | - |
| | | 소 계 | 355 | 459 | 343 |
| 9 | 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 마포구 | 124 | 99 | 86 |
| | | 용산구 | 94 | 58 | 96 |
| | | 서대문구 | 150 | 146 | 86 |
| | | 소 계 | 368 | 303 | 268 |
| 합계 | | | 3,398 | 3,399 | 3,3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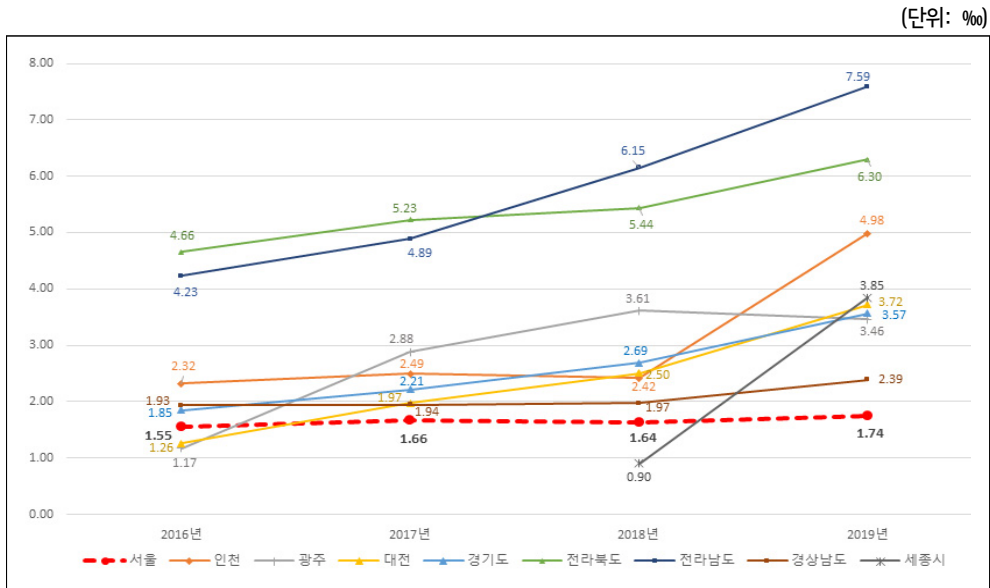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서울시 내부자료, 각 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어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피해아동을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피해아동 수’를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7). 2016년 전국의 평균 피해아동 발견율은 2.15%로 나타났고, 2015년 대비 약 0.83%p 상승하였다(보건복지부, 2016, 2017, 2018, 2019). 한국의 피해아동 발견율의 지속적인 상승은 발견되지 않는 잠재적 아동학대 사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일차적 과제는 신고접수의 확대를 통해 피해아동을 발견함으로써 아동학대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박순권, 2020).

2019년의 전국 평균 피해아동 발견율은 3.81%이며, 2018년 대비 0.8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7.59%, 강원도 7.0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특별시 1.74%, 경상남도 2.39%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 피

해아동 발견율은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하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서울시의 신고접수 확대와 피해아동 규모 파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림 II-10 ■ 피해아동 발견율



자료: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 자료

2) 아동학대 신고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중 하나는 신고의무자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의무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1963년 미국에서 발효된 이후 여러 국가에 파급되어 적용되고 있다(Mathews, 2015, 정선영, 2019 재인용).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의 역사가 긴 서구 국가들에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미국의 경우 약 60%) 한국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점차 증가하고는 있지만 전체 신고건수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아동학대의 신고는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된다. 아동학대 과소신고는 학대 행위의 심각성, 학대의 종류, 학대 행위자 및 특성, 피해아동의 특성, 신고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 아동학대 목격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대행위가 심각할수록 과소신고의 가능성이 낮고, 정서학대는 타 학대보다 과소신고 가능성이 높으며, 학대 행위자가 보육교직원보다는 부모일 때 과소신고의 가능성이 높고, 학대행위자가 무직일 때 과소신고의 가능성이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피해아동이 장애가 있고, 반항/충동/공격성 등의 특징이 있을 때 과소신고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며, 신고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을수록 과소신고를 하게 되고, 아동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으면 과소신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정선영, 2019).

그리고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개인의 인식과 해석수준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는 달라질 수 있다(고혜인·김성봉, 2019a; VanBergeijk, 2000). 아동학대 신고를 자신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신고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VanBergeijk, 2000).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고수준 해석(왜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하는가)보다 저수준해석(어떻게 아동학대 신고를 할 것인가)에 해석수준이 아동학대 신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 신고 교육 또는 홍보자료 등이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추상적인 수준의 홍보나 교육보다는 도움 과정과 방법을 인지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의 홍보나 교육이 개인의 신고의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혜인·김성봉, 2019a; Fujita, Eyal, Chaiken, Trope, & Liberman, 2008). ‘왜’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추상적인 질문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보다는 ‘어떻게’ 아동학대를 신고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감소시켜 아동학대 신고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혜인·김성봉, 2019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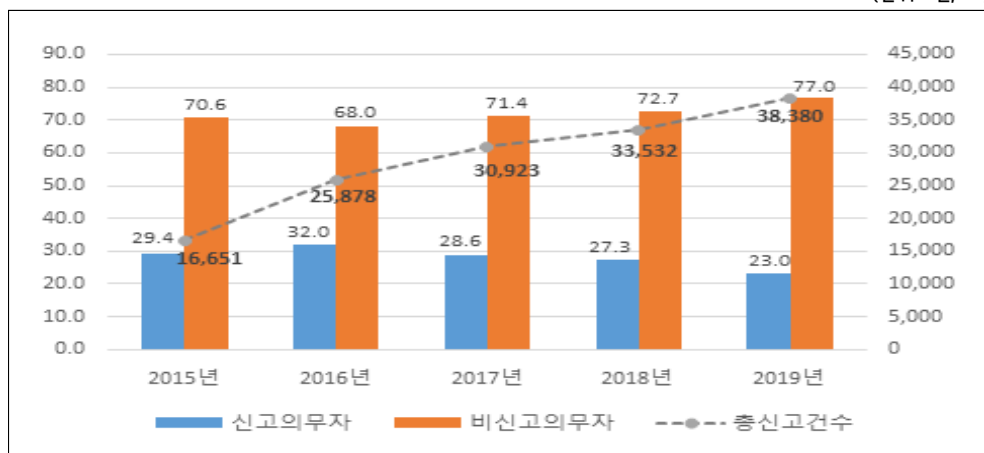
또한 성별, 연령, 결혼여부 등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옥경·정규석·하정화·이혜주, 2009), 아동학대 사건 발견 경험이나 아동학대 교육 이수와 같은 아동학대 관련 경험(김진선·박경숙, 2005; 최경일·임종호, 2010), 신고자의 아동학대 관련 지식, 가치관, 신념(강상·유수정, 2014; 윤귀진, 2015; Delaronde, King, Bendel, & Reece, 2000; Feng & Levine, 2005)과 같은 요인이 신고의도 및 신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사례 특성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신체학대와 성학대가 방임이나 정서학대에 비해 학대로 인식되는 수준이 높고 신고의도도 높으며 (이옥경 외, 2009; 조경미·김은주, 2016), 모든 유형의 아동학대에서 학대행위의 심각성을 높이 인식할수록 신고의도도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김수정, 2013; Ashton, 1999).

2000년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가 마련되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김은정, 2016). 한국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아동학대의 전국적인 추세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아동학대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은 16,651건, 2016년은 25,878건, 2017년은 30,923건, 2018년 33,532건 2019년 38,380건으로 나타났으며,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신고의무자의 신고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이후 신고의무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비신고의무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016년 32.0%였으나 2019년은 23.0%로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신고의무자의 비율이 전년 대비 4.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016년 68.0%에서 2019년 77.0%로 증가하였다.

■ 그림 II-11 ■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 수 대비 신고의무자/비신고의무자 분포(전국)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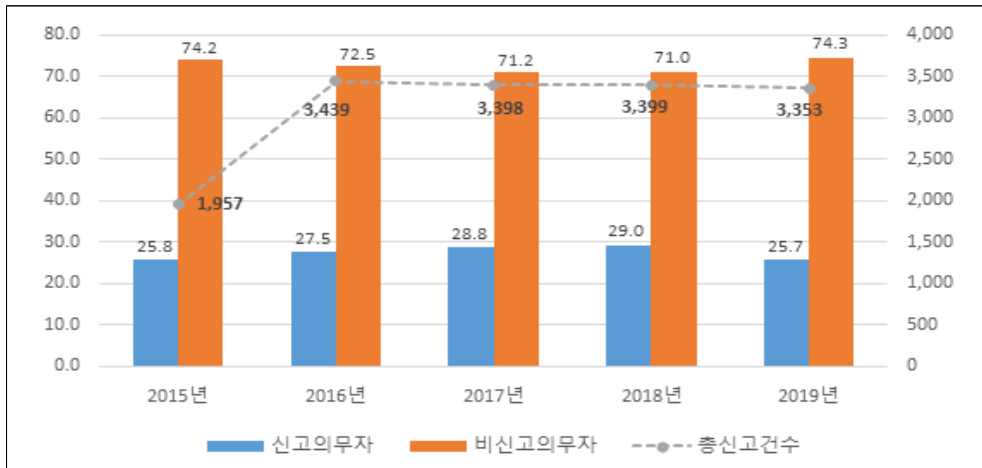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서울시 내부자료, 각 년도

서울시는 전국의 증가하는 추세와는 달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고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는 보이고 있다. 2015년 1,957건에서 2016년 3,43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3,398건, 2018년 3,399건, 2019년 3,353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의 비율은 신고의무자에 비해 비신고자의무자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의 추세와는 달리 신고의무자의 비율이 2016년 27.5%, 2018년 28.8%, 2018년 29.0%로 증가하다가 2019년 25.7%로 나타나 2018년 대비 3.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신고의무자의 비율은 2015년과 2016년은 전국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II-12 ■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 수 대비 신고의무자/비신고의무자 분포(서울시)

(단위: 건, %)



자료: 보건복지부, 서울시 내부자료

한국의 아동학대 예방체계는 '예방'의 측면보다는 신고 이후의 '대응' 체계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신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신고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은정, 2016). 아동학대신고는 크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2016년 5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부분적

으로 통합되는 직군은 있으나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의료기사,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강사, 학원강사, 소방구급대원,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등이 포함되며, 비신고의무자는 아동본인, 부모, 친인척, 이웃·친구, 경찰, 종교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살펴보면 2016년의 전체신고 25,878건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8,288건으로 32.0%로 나타났고,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가 17,950건으로 68.0%로 나타났다. 2017년은 전체 신고건수 30,923건 중 신고의무자 8,830건으로 28.6%로 나타났으며, 비신고의무자는 22,093건으로 71.4%로 나타났다. 2018년은 전체건수 33,352건 중 신고의무자는 9,151건으로 27.3%로 나타났고, 비신고의무자는 24,381건으로 72.7%로 나타났다. 2019년은 전체신고38,380건 중 신고의무자가 8,836건으로 23.0%로 나타났고, 비신고의무자가 29,544건으로 77.0%로 나타났다.

표 II-6 신고의무자 유형(전국)

(단위: 건)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초·중·고교 직원 | 3,978 | 5,168 | 6,406 | 5,901 |
| 의료인 | 216 | 296* | 325* | 293* |
| 아동복지시설종사자 | 498 | 407 | 411 | 337 |
|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 27 | 33 | 56 | 38 |
| 보육교직원 | 286 | 313 | 213 | 448 |
| 유치원교직원, 강사 | 114 | 115 | 115 | 140 |
| 학원강사 | 24 | 9 | 18 | 32 |
| 소방구급대원 | 39 | 33 | 24 | 32 |
|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 12 | 9 | 8 | 4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 11 | 16 | 14 | 16 |
|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 301 | 169 | 283 | 125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815 | 819 | - | - |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312 | 271 | 211 | 266 |
|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 11 | 20 | 25 | 26** |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98 | 27 | 72 | 200 |
|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 695 | - |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 44 | 48 | 31 | 67 |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 35 | 33 | 52 | 82 |
| 정신보건센터종사자** | 51 | 38 | 48** | 63***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 122 | 274** | 168*** | 128**** |
| 응급구조사 | 2 | 2 | 0 | 1 |
| 의료기사 | 2 | - | - | - |
| 청소년시설,단체종사자 | 223 | 357 | | 286 |
|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종사자 | 75 | 43 | 276 | 105 |
| 아이돌보미 | 1 | 8 | 11 | 11 |
|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 296 | 317 | 255 | 225 |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 | 0 | - | - | - |
| 육아종합지원센터종사자*** | 0 | 4 | 4 | 9 |
| 입양기관종사자*** | 0 | 1 | 4 | 1 |
| 계 | 8,288 | 8,830 | 9,151 | 8,836 |

2016년: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016년 9월 23일 ~ 2016년 11월 30일까지 신고의무자에 해당

2016년: ** 2017년 5월 30일: 전부 개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

2016년: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 육아종합지원센터종사자, 입양기관종사자: 아동동학대처벌법 개정(2016년 5월 29일)으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으로 포함

2017년 *: 의료인에 의료인, 의료기사 포함(2016년 11월 30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시행으로 의료인, 의료기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는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 신고자 유형이 통합되면서 항목이 통합됨)

2017년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 포함

2018년 *: 의료인·의료기사

2018년 **: 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

2018년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

2019년 *: 의료인·의료기사

2019년 **: 아동권리보장·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2019년 ***: 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

2019년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

자료: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 자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은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2009년에는 유치원 교직원, 2012년에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가 추가되었다. 2014년에는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인력이 추가되었으며, 2016년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입양기관 종사자가 추가되고, 의료인과 의료기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가 통합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신고의무자 직군에 속하였으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6.11.30. 시행)으로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제외되었다(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표 II-7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7) 직군 변화⁸⁾

| | 2016 | 2017 | 2018 | 2019 |
|-----------|-----------------|--|-----------------|---|
| 신고의 무자 | 초·중·고교직원 | 초·중·고교직원 | 초·중·고교직원 | 초·중·고교직원 |
| | 의료인 | 의료인·의료기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2016.11.30.시행)에 따라 통합) | 의료인·의료기사 | 의료인·의료기사 |
|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 | 보육교직원 | 보육교직원 | 보육교직원 | 보육교직원 |
| | 유치원교직원, 강사 | 유치원교직원, 강사 | 유치원교직원, 강사 | 유치원교직원, 강사 |
| | 학원강사 | 학원강사 | 학원강사 | 학원강사 |
| | 소방구급대원 | 소방구급대원 | 소방구급대원 | 소방구급대원 |
| |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 종사자 |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 종사자 |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 종사자 |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 |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이동권리보장원·가정위탁지원 센터종사자 (2019.7.16.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통합) |

7)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087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2항의 14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 신설됨

8) 관련 법령 변화는 부록 참조



| | 2016 | 2017 | 2018 | 2019 |
|--|---------------------------------------|---|---------------------------------|---------------------------------|
|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간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간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 간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 간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
| |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2016.11.30.시행)에 따라 통합) | 응급구조사 | 응급구조사 |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 응급구조사 |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
| | 응급구조사 |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 청소년보호센터·재활센터 종사자 | 청소년보호센터·재활센터 종사자 |
| | 의료기사 | 청소년보호센터·재활센터 종사자 | 아이돌보미 | 아이돌보미 |
| |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
| | 청소년보호센터·재활센터 종사자 |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
| | 아이돌보미 |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 입양기관종사자 | 입양기관종사자 |
| |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 입양기관종사자 | | |
|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2016.11.30부터 신고의무자) | | | |
| |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2016.11.30.부터 신고의무자) | | | |

| | 2016 | 2017 | 2018 | 2019 |
|---|----------------------------------|----------------|--|----------------|
| 비신고 의무자 | 임양기관 종사자 (2016.11.30부터 신고의무자) | | | |
| | 아동 본인 | 아동본인 | 아동본인 | 아동본인 |
| | 부모 | 부모 | 부모 | 부모 |
| | 형제자매 | 형제자매 | 형제자매 | 형제자매 |
| | 친인척 | 친인척 | 친인척 | 친인척 |
| | 이웃, 친구 | 이웃, 친구 | 이웃, 친구 | 이웃, 친구 |
| | 경찰 | 경찰 | 경찰 | 경찰 |
| | 종교인 | 종교인 | 종교인 | 종교인 |
| |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삭제로 인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항목을 비신고의무자의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항목에 통합) |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 | 낮선사람 |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
|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2016.09.23.~11.30까지 신고의무자) | 의료사회복지사 | 의료사회복지사 | 의료사회복지사 | |
| | 낮선사람 | 낮선사람 | 낮선사람 | |
| | 익명 | 익명 | 익명 | |
| | 기타 | 기타 | 기타 | |
| | | | 범원 | |

출처 :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 자료



아동학대 비신고자의무자는 아동본인,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이웃·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관련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종사자 등이 있다. 아동학대 비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신고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비신고자의무자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에서는 부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7,590건으로 부모의 신고가 4,619건으로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보호전문기관장 및 종사자의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은 총 22,093건 중에서 6,881건으로 약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은 총 24,381건 중 7,756건으로 약 32%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은 총 29,544건 중 12,389건으로 약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8 아동학대 비신고자 유형(전국)

(단위: 건)

| | 아동 본인 | 부모 | 형제, 자매 | 친인 척 | 이웃, 친구 | 경찰 | 종교 인 | 사회 복지 관련 종사 자 | 낮선 사람 | 아동보호 전문 기관장및 종사자 | 의료 사회 복지 사 | 익명 | 법원 | 기타 | 계 |
|------|----------|-------|-----------|---------|-----------|-------|---------|---------------------------|----------|---------------------------|---------------------|-----|----|-------|--------|
| 2016 | 2,322 | 4,619 | 341 | 657 | 1,858 | 1,426 | 40 | 4,088 | 649 | 619 | - | 244 | - | 727 | 17,590 |
| 2017 | 3,883 | 5,328 | 359 | 738 | 1,963 | 645 | 24 | 323 | 685 | 6,881* | 79 | 271 | - | 914 | 22,093 |
| 2018 | 4,512 | 6,089 | 403 | 607 | 1,859 | 406 | 18 | 933** | 443 | 7,756 | 66 | 228 | 34 | 1,027 | 24,381 |
| 2019 | 4,752 | 6,506 | 307 | 647 | 1,718 | 291 | 24 | 959 | 597 | 12,389 | 25 | 275 | 68 | 986 | 29,544 |

* : 2016년 9월 23일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 포함되었으나 이후 2016년 11월 30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제외하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제외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비신고의무자에 해당됨

** :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제 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7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삭제로 기존의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항목을 삭제하고 비신고의무자의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에 통합되었음

자료: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 자료

III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소결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아동학대 신고율 현황 분석과 향후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과 관련 기관(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종사자 11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국내 아동학대 학계 전문가 6인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는 11월~12월에 실시되었다. 면접조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조사와 전화조사를 병행하였고 소요시간은 약 1시간이다. 전문가 조사는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표 Ⅲ-1 | 면접조사 개요

| 구분 | 성별 | 직책 | 형태 |
|-------|----|----|------|
| 대상자1 | 남 | 관장 | 민간위탁 |
| 대상자2 | 남 | 관장 | 민간위탁 |
| 대상자3 | 여 | 관장 | 민간위탁 |
| 대상자4 | 여 | 팀장 | 직영 |
| 대상자5 | 남 | 팀장 | 직영 |
| 대상자6 | 남 | 관장 | 민간위탁 |
| 대상자7 | 남 | 관장 | 민간위탁 |
| 대상자8 | 남 | 관장 | 민간위탁 |
| 대상자9 | 남 | 관장 | 직영 |
| 대상자10 | 여 | 관장 | 민간위탁 |
| 대상자11 | 남 | 팀장 | - |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시 혹은 해당 권역의 아동학대 신고율 추이 변화의 특성을 질문하고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신고율은 반드시 올라야만 하는 당위성 그리고 목표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아동학대 신고와 발견율 제고를 위한 자원 연계필요성, 서울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Ⅲ-2 | 면접조사 주요 내용

| 구 분 | 내 용 |
|-----------------|-----------------------------------|
| 아동학대 신고 특성 | 기간별, 지역별 아동학대 신고 양상 변화 |
| | 아동학대 유형(신체/정서/성/방임 등)과 심각도별 신고 차이 |
| | 학대 행위자, 피해아동 특성과 신고 특성 |
| 신고 영향요인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 홍보·예방교육 등 |
| | 신고의무자/비신고의무자 범위와 특성 |
| 신고율 제고 필요성 | 발견율과 신고율 제고 |
| | 사회복지 영역의 사례관리 영역과 범죄 신고 영역 |
| 연계와 협업 현황 및 필요성 | 경찰(지구대, APO, 수사관 등)과의 협업 상황 |
| | 병원, 사회복지기관 등 지역사회 연계 필요성 |
| | 찾아가는동주민센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와의 연계 필요성 |
| 중앙-서울시-자치구 역할 | 공적 조사 체계 전환과 향후 민간 사례관리 강화 필요 사항 |
| | 수서모델과 노원모델의 장단점 |
| | 서울시 역할과 심층사례관리 기관으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
| 기타 | 그 외의 정책 개선 필요사항 |

또한, 전문가 조사는 학계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가 조사는 서울시의 아동학대 예방 기능 평가, 서울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기능 향후 방향 그리고 서울시의 다양한 인프라가 신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의견 수렴으로 진행되었다.

2. 조사 결과

1) 면접조사 결과

① 아동학대 신고율 정체와 발견율

- 아동학대 신고율은 사회적 이슈 그리고 이에 의한 민감도 상승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아동학대 신고율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 아동학대가 늘지 않거나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동학대가 실제 발생하였더라도 여러 가지 신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율과 발견율이 오르지 않는다.

“학대가 없어서는 아니고 사회적 이슈와 민감성 때문인 것 같아요.” <대상자 3>

“학대가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데이터가 없고, 상담원 인원이 줄거나 감시체계가 퇴보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줄었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학대가 줄었거나 신고를 많이 안했거나, 근데 검증할만 한 도구는 현재 없습니다.” <대상자 1>

“통합사례관리회의, 위기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는데 경찰(APO)이 신고가 오면 전날 신고 온 사항을 검수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해요. 이것을 위기관리통합지원센터로 가져가요. 위기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회의하고 거기서 사례를 상정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약간 의심을 해요(누락이 되거나, 가정폭력으로 진행되거나).” <대상자 3>

“올 해 같은 경우에도 사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신고해야 이런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매체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신고율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어요.” <대상자 10>

② 아동학대 유형과 아동학대 민감도가 신고에 미치는 영향

- 통계분석 결과와 조사 대상자 의견에서 모두 최근 정서학대가 많아지는 경향이 포착된다. 신체학대와 달리 정서적 방임은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판단은 아동학대 민감도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다. 서울의 특성상 아동학대 민감도가 낮은 편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의 민감도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특성이 아동학대 유형과 신고 경향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대상자 6>

“지역에 따라 아동학대의 차이가 커요. 아동학대가 심각하거나 그 수준이 심각한 사례가 많은 지역도 있고, 자원연결이 안돼서 심각하게 빨리 분리해야하는 상황이 많은 지역도 있어요.” <대상자 6>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지식인이 많고 행위자 유형이 고학력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경우 정서학대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해요.” <대상자 1>

“신체학대의 경우에는 다치거나 피나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정서적 방임은 판단이 애매해요.” <대상자 2>

“조사결과 공무원들의 판단 민감도가 다르게 나타났어요. 특히, 신고량의 경우 6개 구를 다 합쳐도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상자 1>

“똑같이 학대피해 입는데 그게 학대냐고 하시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이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즉,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학대로 안 보는 경우도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상자 1>

“이제는 아동학대를 완전히 범죄로 보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기로에 있는데 아직은 사회 상념과는 조금 동떨어져있어요. 국민들이 아직은 사회 상 범죄라고 보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비슷한 것 같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대상자 11>

“우리나라 민감도가 상당히 낮아요. 신고율이 너무 낮아요.” <대상자 8>

□ 대상자들은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감수성, 민감도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아동학대 전체 발생 건수가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서울시 아동학대 특성이 타 지역과 다르거나 신고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상이할 수는 있다.

“서울은 민감도가 더 높고 강력한 사건이 낮은 것 같아요. 개인적 경험상으로는 신고를 안 한다고 생각해요. 6년 전 서울이 지금 통계량 거의 비슷해요. 서울은 핵가족화가 더 심화되어 있어서 옆집에 관심이 없는 상황들이 많아 보여요. 서울의 인구밀집도가 높아서 조사를 하고 주요 대상자들을 만나고 주변인 조사를 하면 다 알고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서울은 감수성이 높지만 개인주의화 되면서 저 집

은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대상자 11〉

“심각한 사례는 타 지역이 더 많아요. 지역적인 환경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시는 밀집도가 있는 곳이고, 타시도는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던지 강력한 성학대 사건이 고질적으로 그 마을에 계속 있었거나 이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이런 환경에 따른 심각한 아동학대가 서울은 그런 환경은 아니니까 좀 덜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상자 10〉

“신고율 함에 있어서 수도권이 학대 인식에 대한 폭이 넓어서 더 경미한 건들이 신고 돼요. 지방은 심각한 정도가 높은 케이스들이 더 많다고 느껴져요. 현장대응에 있어서도 수도권은 접하는 매체의 다양성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것 같아요.”

〈대상자 11〉

- 신고율 증감은 다양한 원인이 있고 절대적 수치의 높고 낮음을 같음하기 어려우며 아동학대 판단 기준, 사회적 인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즉, 신고율 결정요인은 복합적이다. 다만, 정책적으로 어떤 경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동학대 신고로 유입되는 과정 전반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안산이 전국 신고율 탑인데 안산이 왜 굳이 신고가 많을까라는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 알기가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상자 11〉

“어느 정도면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보고체계, 절차기준이 모호해요.”

〈대상자 2〉

③ 경찰의 아동학대 신고 연계와 아동학대 신고율

-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이의 판단 기준이 애매할 때가 있다. 가정폭력 조사를 하던 중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다고 해도 아동학대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가정폭력을 처리하는 담당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신고 되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에서 가정폭력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

은 것 같아요. 이 경우, 아동학대로 넘어오지 않아 아동복지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정폭력법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대상자 2>

□ 경찰 통보 시 아동학대 신고 연계 누락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아동학대 인식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신고의무자 집단이나 전문가들이 아닌 경우는 일반적으로 112로 신고하기에 아동학대 발견을 위해서는 지역경찰, APO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아동학대 교육이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지구대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APO도 경찰과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다 보니 건의하는 사항을 APO나 여청계 과장님 등이 어느 정도 지구대에도 자체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상자 9>

“112 신고 학대코드 신고도 줄긴 했다고 해요. 통보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하면서 학대 자체 코드가 줄었다고 해요.” <대상자 3>

“일반인은 112로 신고를 많이 하게 돼요. 다만, 유관기관(상담하는 기관, 사례 관리하는 기관)은 경찰신고를 부담스러워 해서 지구대에서 학교로 바로오거나 이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잘 아는 일선학교는 거의 80~90% 기관으로 신고 해요.” <대상자 3>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매뉴얼대로 하고 가정 폭력 상황으로 나가서 인지하고 통보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일부 APO들은 통보해주지 않아요. 대부분 112 신고하면 나가는데 2년 전부터 정서학대 50%이상이 가정폭력 시초인데도 정서호소하면 통보안하고 묵혀요. APO들이 매년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너무 많고 전문성도 없어요.” <대상자 2>

“지역경찰들이 ‘학대의 상황을 보니 문제가 심각하고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주면 APO가 내용을 상부로 올릴 수 있지만 지역경찰들이 종결 합의하는 사항도 많아요. 지역경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요.” <대상자 2>

“아동학대의 면밀함에 관한 지구대 경찰 교육이 필요해요.” <대상자 8>

“추가적으로 경찰교육도 필요해요.” <대상자 2>

“112에 바로 신고를 하면 지구대가 바로 출동해요. APO 통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넘어와야 하는데 처벌의사가 없거나 지구대에서 민감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APO에 넘어가지도 않거나, APO가 알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넘어왔지만 해당 케이스가 인지조사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대에서 판단이 잘못되면 수사로 이어지지 않아

요. 연계되지 않는 케이스도 발생해요.” <대상자 10>

“일선 지구대에서 경찰 조직에서 아동학대보다 심한 강력사건을 많이 다루다보면 아동학대 건은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아동학대 같은 사건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땀 체벌이 훈육의 일환이었다든지 여기서 아이의 비행이나 아동 요인이 포함돼버리면 학대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상자 7>

□ 경찰과의 협업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으며 경찰이 조사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경찰이 보내 온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도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체 처리 절차에 있어서 지자체는 아동학대 전반을 관할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APO 수가 적은 인력문제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밀접하게 일하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실제 조사를 하는 수사팀과의 연계성 부족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경찰과의 협업도 필수적이예요.” <대상자 4,5>

“경찰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협업을 해요. 신고접수가 누구한테 되든 서로 통보를 해서 같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업무 분담도 명확하게 되어있고 돌아와서 아보전이 자연스럽게 수사 소견서를 보내는 형태를 경찰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대상자 11>

“학대를 대응하는 공무원 주체성이 중요하고 조사를 나갈 때도 경찰이 먼저 나가버리고 경찰이 다 한 다음에 통보해주는 형식은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대상자 11>

“경찰과의 관계의 핵심은 경찰청의 파워 문제가 아닌 컨트롤 타워의 문제라고 봐요. 내가 아동을 보고, 이런 것보다는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상 ‘이미 경찰이 나가서 확인까지 했는데 이미 끝난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 있어요.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경찰에게 받아서 온 정보로 가늠하는 그런 형태가 현재까지 너무 강했다고 생각해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상자 11>

“모든 시군구가 경찰하고 직접 해온 것은 없고 서울시도 위통이 있기는 하지만 협조체계를 완벽히 갖춰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대상자 9>

“APO 수가 너무 적어요. 현장 업무, 정책 예방 홍보, 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이나 노

인 학대 업무까지 해야 하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면밀하게 밀착해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상자 8>

“실제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해서 임시조치 조사를 하는 건 수사팀이지 APO아니에요. 수사팀은 아동학대에 대한 생각이 APO와 차이가 많아서 APO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요. 실제 지원체계와 수사체계의 일원화와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요.” <대상자 8>

④ 신고자의 신고 부담감과 신고 이후의 보호 대책

- 신고를 하면 사건화가 되며 이 때문에 신고자는 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 신고가 미칠 영향력과 신고자 보호의 미흡함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의 징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홍보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신고를 하려고 할 때 그 이후 기관에서 어떻게 개입할지 모르고 막연한 상황이 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을 하면 원가정이 영향을 안 받는 가정은 없어요.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다는 것 자체를 큰 사건으로 여기시고, 거부적인 반응을 일차적으로 보이시는 가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깨지 않고 개입이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대상자 10>

“진짜 내가 보호를 받지 못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쳐서’, ‘내 의도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안 움직여 줘서’ 등 이러한 이유들로 신고가 꺼려질 수 있는데 사회복지의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대상자 11>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저희한테 상의 차원에서 연락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다만, 아동 학대 케이스의 심각도가 높은 경우에는 112에 바로 신고하는 것을 권유해요.” <대상자 10>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같이 상의하고 고민하자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대상자 3>

- 특히 신고의무자는 비밀보장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다. 또한, 사례관리자는 신고 이후 사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신고를 하면 법이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오는 부담감으로 인해 신고 장벽을 느낄 수 있다. 신고의무자 부담감 경감과 신고자 보호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장의 의지가 해당 기관의 신고율을 좌우할 수 있기에 기관장 대상의 교육이나 별도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비밀보장이 되며,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신고의무자 직군은 노출되는 것을 각오하고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대상자 1>

“신고의무자가 신고했는데 보호받을 수 있을지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상자 2>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관계가 틀어질까봐', '분리될까봐'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이 있어요. 체계의 개선을 통해 시선의 자유로움이 확보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대상자 6>

“아이의 생활이 교육기관과 집이므로 신고의무자는 교사, 부모 아니면 주변이웃이라서 행위자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대상자 1>

“부모들의 민원성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학교의 신고의무자들은 신고자 노출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신고자를 노출 하지 않고 추측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학대행위를 이야기 하다보면 쉽지 않아요.” <대상자 10>

“학교의 경우, 학교 내에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해야 해서 학교장의 방향, 가치관에 따라서 신고율이 차이가 나요. 명확하게는 신고율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고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거죠. 학교장 대상 교육이나 기관장 대상으로는 하는 교육은 없어요. 학교장이나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시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꺼려질 것이고 어떤 선생님들은 장의 허가 없이 다이렉트로 신고했다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상자 11>

⑤ 지역사회 내 예방적 접근과 차등적 대응시스템 구축 필요성

- 아동학대는 신고가 되어야 아동학대에 공공이 개입하고 이들이 아동 보호 체계로 유입된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신고 이전 단계에서 공공 사례관리를 할 경우 아동학대로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방임의 경우가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 면접조사 결과 서울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나 자원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이는 장단점이 있다. 위기도를 낮춤으로써 저위기 사례의 문제

상황이 해소될 수도 있고 아동학대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통합사례회의의 실효성 강화 등이 강조되는 지점이며 차등적 아동보호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동학대는 일상 속에서 발생하고 발견되는 만큼 더욱 더 다각도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아동학대 판단 기준은 방임 정도, 정서학대 정도에 따라 구별돼요. 서울은 인프라(ex. 예방기관, 지자체 조직)가 굉장히 많이 갖춰졌는데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입이 가능해요. 반면에, 지방은 아동복지 관련 기관이 없어서 학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본인프라가 없어요. 무조건 요보호든 학대로 잡아야 처리가 가능해요.” <대상자 4,5>

“신고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지원하거나 연계하거나 회의하거나 구청사례관리 상정하거나 통합사례관리 하게 하거나 찾동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상정되어서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대상자 3>

“현재 공공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ex.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등).” <대상자 6>

“방임은 사회적 관계망에서 서비스가 촘촘해지고 지역사회에서 학대로 인식하고 관리하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늘었고, 학교 지역사회에서 방임 신고 확인 체크하는 기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학교 안 보내면 집에 경찰이 출동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늘어나서 방임은 줄어 든 것 같아요.” <대상자 7>

“서울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이나 자원이 많아서 동/구가 하는 일을 보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게 보여요.” <대상자 3>

“통합사례회의를 많이 하려고 해요. 지역 얘기하면서 서울시의 역할 이야기하고 직접적인 것도 있으나 간접적인 것, 총괄하면서 연계하는 것 까지 서울시가 담당해요. 예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했어요.” <대상자 6>

“찾동은 찾아가는 활동이므로 아동학대를 볼 가능성이 커 보여요. 찾동이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감도 있게 연계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대상자 10>

“사례관리로 인해 방임이 줄어들고 양육 스트레스 수치와 위험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학대들도 줄어들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복지관이나 찾동이나 자원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결한 것들은 해결하고 다 신고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방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이거나 쓰레기 집과 같은 사례가 다 지자체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 지자

체에서 해결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보여지긴 해요.” 〈대상자 10〉

- 그러나 사례관리를 지속하면서 신고가 필요한 상황에도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례관리를 진행하면서 아동학대 신고 필요 시기를 놓치거나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사례마다 아동학대 모니터링과 적절한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사례를 관리하다가 학대 상황이 발견되면 신고를 바로 해야 하는데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은 신고를 하시면 사례관리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므로 적극적 신고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대상자 8〉

“공공에서 위기가정 찾아내서 학대로 신고 하는게 아니라 자원연계하거나 해서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기능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사례가 악화되었을 때가 돼서야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면 좋은데 기초 단계에서 계획 중인 내용이 신고하면 틀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는 사례관리자들이 많아요.” 〈대상자 3〉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지를 제공하시는 종사자들이 대상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개입을 하시다보니 아동학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조금 더 해보고’라는 마인드를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임도 신고를 안 하는 것 같고 때렸다고 해도 ‘나 신고해요’하고 바로 전화하는 게 아니라 부모 교육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신고가 점점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상자 11〉

- 복지인프라는 방임 외에도 신체 학대 등 다른 유형의 학대 신고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학대가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며 신고율 저하 경향성을 해석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복지인프라의 순효과와 역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복지체계가 잘 돼 있으면 학대 발생율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쳐요.” 〈대상자 8〉

“가정 내 스트레스의 전반적 상황이 경감되면 학대유형과 상관없이 발생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고 봐요.” 〈대상자 8〉

“행위자의 특성이나 아동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보다는 가정 위험도가 상승할 때 가족

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고, 가족 내에서 가장 약한 구성원에게 폭력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 대상이 아이들인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3~4명 있는 가정에서 유독 한 아이에게 학대가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높아져 있는 가정 내 스트레스 상황이 폭력성으로 변할 때 가장 취약한 구성원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여줘요.”

〈대상자 8〉

“학대행위자들의 많은 특성 중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직했거나 단순노무직 근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면 학대 발생의 여러 요인 중 한, 두 개를 경감시키는 건 사실이에요.” 〈대상자 8〉

“복지인프라는 방임 말고도 신체적 학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쳐요. 학대 점수를 1~10 점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5일 때 신고하고 어떤 사람은 1일 때 신고하고 가지각색이니까 초점을 잡아줘야 하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잡아줄 수 있는 게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학대 기준이 다 달라요. 시대마다도 다르고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지금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대상자 11〉

“학대 간 연결성 때문에 전체 학대 유형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대상자 8〉

□ 서울은 차등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양육을 지원하고 위기단계별로 차등적인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아동에게 위기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법 복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럴수록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더욱 더 중요해 진다.

“서울의 경우, 차등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현재 신고율 상황이 이러한 서울시 정책 환경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차등적 대응이 이루어질 때 예방적인 것도 강화되고 강제성에서도 벗어 날 수 있어요. 죄를 졌다고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으로 접근한다면 예방적 효과도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상자 6〉

“아동복지 차원에서 가정에 접근하면 학대로 풀어야 할 문제도 있고 그 전 위기단계에서 대안을 마련해야하는 게 있어요. 아동에게 발생한 위기를 다 학대로 풀 필요는 없어요. 다만, 종사자 교육훈련이 중요해요. 위기 수준에서 풀 것인지 학대에서 풀 것인지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하는데 실제 교육에 가보면 그 기준이 모호해서 헷갈리는 경

우들이 많아요.” 〈대상자 8〉

⑥ 노원구의 구 직영 모델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재지의 높은 신고율

□ 노원구는 타 자치구보다 신고율이 높은 편이다. 최초로 기초지자체 단위로 조사와 사례관리를 구에서 관할하는 모델로써 현재까지 성공적인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노원구 신고율이 높은 것은 학대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이는 구 단위의 홍보활동과 인식개선 경찰 및 지역자원 연계가 원활한 구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원구(2017년 12월 개관)에서는 구가 직접 담당해요. 구청공무원이 아동학대 관련 조사와 사례관리를 직접 하는 최초의 사례예요.” 〈대상자 1〉

“수서 모델은 조사를 공공이 하고 관리를 민간이 하는 거예요. 컨트롤타워가 분리되어 있고 조사는 공무원이 컨트롤하고 사례관리는 민간이 컨트롤해요. 노원 모델은 둘 다 공공인데 한 명은 공무원이고 한 명은 공무원이예요. 공공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는 건데 업무와 소속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요.” 〈대상자 11〉

“노원구는 학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신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응급으로 일어난 사건도 응급조치까지 가는 사건은 비중이 10%도 되지 않아요. 보통은 신고건수 대비 학대 판정 되는 건 50% 내외예요. 올해도 지금은 40%정도예요. 신고건수는 많은데 학대 판정되는 건 줄어들고 있어요. 학대 신고건수가 많으나 그게 나쁜 것은 아니고 초기에 대응할 수 있어서 큰 학대로 이어지지 않고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대상자 9〉

“노원은 구만 담당하는 좋은 예로 이번 년도도 학대신고가 가장 많아요. 노원구만 많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발견율이 높은 거예요.” 〈대상자 8〉

“서울시 자체는 상당히 진보적인 것 같고 여러 모델들을 실험을 해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와 노원구는 아주 파격적이었어요.” 〈대상자 11〉

“공공화 될 때 노원구 모델을 상당히 많이 주장했어요.” 〈대상자 11〉

“노원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만 맡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생겼어요. 구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 홍보도 더 하고 지역 안에서 활동을 더 하니까 인지도는 더 늘어났어요. ○○구 사례가 더 많은 이유도 (해당 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구에 있기 때문에 신고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관할 구역인)

**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좀 적기도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 아니라 ○○에 있기 때문에 좀 멀다고 생각해서 덜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대상자 10>

- 한편, 다른 권역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소재한 자치구의 신고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물리적으로 소재 자치구 중심으로 홍보, 연계 사업 등을 진행하기 수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권역별로 관할이 구분되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향후 장기적으로 구별 단위 관할이 가능하도록 재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노원은 아동보호체계 시작 전에 통합 운영모델 제시하기도 했어요. 지금처럼 조사가 시군구별로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사례관리도 시군구별로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대상자 9>

“구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모든 구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생기는 것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최근 서울시에서 광역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촘촘하게 2~3군데 정도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시군구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상자 9>

“서울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수가 늘지 않는 것도 (서울시 신고율 정체의) 하나의 원인이예요.” <대상자 8>

“서울시 25개 구들의 아동학대 발생율은 차이 폭이 커요.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아동학대신고가 많은 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재지인 경우가 많아요.” <대상자 8>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구 안에 소재해서 접근성이나 활동 바운더리가 밀접한 곳은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어요.” <대상자 8>

- 이에 더해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려면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력 확보는 보다 아동학대 관찰과 위기도 관리의 질, 심층 사례관리를 통한 재학대 방지 등과 직결된다.

“인력 확보는 발견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현장 조사도 해야 하고 슈퍼비전도 해야 하고 인권도 해야 하고 상담도 해야 하고 기관에 들어오는 아이도 관리해야 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대상자 4,5>

⑦ 시도 지자체의 역할과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컨트롤타워는 지자체이며 서울의 경우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수서, 현재 서울시 직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울시 아동권리보장원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시도 보장원이 생길 경우 소통의 통로가 마련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적합한 캠페인, 워크숍,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중앙에 하나의 아동권리보장원이 존재할 경우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없기에 시도 단위로 보장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서는 자치구 관할하던 것을 벗어나서 광역시다운 것을 해야 해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왔던 것처럼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울러서 교육이나 홍보,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는 큰 차원에서의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공공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기관을 더 키워서 현재는 몇 개의 구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25개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대상자 9〉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도에서 예산을 통으로 받아서 직원들 워크숍 프로그램까지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도차원에서 필요한 아동 학대 예방 큰 행사를 맡아서 하는 등 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같이 해나가요. 그러나 서울은 그런게 없어요. 이런 기능을 수서에서 해주면 좋을 텐데 수서에서 지금 그걸 하기에는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역할들을 보장원으로 규정해서 가져간다고 하면 좀 더 힘을 실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상자 10〉

“교육홍보는 당연히 중요해요. 다만, 서울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기관마다 지자체마다 홍보에 대한 정도가 다 달라요. 아동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신고의무자교육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고 성과를 관리하거나 아동양육시설을 관리감독만 하는 컨트롤타워가 아닌 전체적인 매니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요.” 〈대상자 2〉

“아동학대는 국가사무고 공무원들이 컨트롤타워라고 봐요. 지자체는 사실상 컨트롤타워예요. 관리 감독은 지자체가 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더 강력하게 행동을 하고 정확히 알고 가야해요. 예방이랑 홍보 같은 경우에는 시차원에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상자 11〉

“과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길에 나서서 홍보를 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

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할 업무는 아니라고 보여요. 이는 복지부에서도 공감해요. 자 치구에서 대시민 홍보나 언론 영상들을 통해 해야 해요.” 〈대상자 3〉

“이벤트성 캠페인보다는 지역행사나 버스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체 시민들에게 노출 가능한 홍보가 필요해요. 서울시 편의점에 홍보 포스터 배분하는 등 시 차원에서 의 접근이 필요해요.” 〈대상자 8〉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찾동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 관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심리 검사 치료고 겹쳐요. 업무를 조금 분배해서 협업을 하 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상자 11〉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부터 지침까지 모든 걸 이끌어왔던 아동보호전문기관 만을 위한 기관이었는데 보장원으로 들어가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서울시 센터가 예 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이 역할을, 서울시에 있는 25개구와 더불어서 민간 아 동보호전문기관 7개도 같이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대상자 9〉

- 아동학대 인식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며 기존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 육과 인식개선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 화 대상 확대와 기존 돌봄·교육 분야 신고의무자 신고 강화가 필요하 다. 교육은 크게 학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아동 학대를 인지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여 발견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 교육으로 구분된다. 각 교육에 대해 현재의 천편일률적인 아동학 대 예방 교육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변화되는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인식개선 이에요. 교육·홍보의 역할이 중요해 요.” 〈대상자 4,5〉

“학교선생님들이 신고 의무자 중에서 제일 많이 신고하시고 그 다음이 의료인들이 신 고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신학기에는 많지 않다가 5~6월에 신고율이 많고 방학 때는 거의 없어요.” 〈대상자 10〉

“아동과 관련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돌봄 적어도 이런 사람들을 확실히 끌어올려준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같은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돌봄 시설과 교육 시설이 정말 중요한 직군이라고 생각해요. 예로, 올해 2~3월부터 학교를 못 갔는데 그 때부터 2~3개월 간 신고를 보면 교원의 신고율 이 큰 폭으로 하락해요. 일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때문에 교원 신고의무자들이 더 기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육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체크리스트도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대상자 11>

“매년 하는 교육내용은 같으나 매년 하는 이유는 신고의무를 인식시켜주기 위함이에요.” <대상자 1>

“신체적 학대를 줄이려면 부모의 인식이 바뀌어야 해요. 때려도 그렇구나 하고 지냈지만 이제는 때리는 것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인식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이 선행 되어야 해요. 학대에 대한 교육을 학생들에게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행위자인 부모에게 해야 효과가 발생해요. 부모 교육은 학대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사회적 인식개선과 홍보도 필요해요.” <대상자 9>

- 아동학대는 대시민 인식개선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시차원에서의 사업과 구차원에서의 사업을 규모에 따라 강화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교사, 경찰을 아이들의 교과과정에 의무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어요. 인권교육은 필수교육이므로 여기에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해요. 대상 연령 구분해서 예방 교육 자료를 만들고, 교육 대상자에 따라 교육 콘텐츠가 달라져야 해요.” <대상자 4,5>

“일반시민들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도 있어요. 서울시 전체 대상 교육, 홍보가 중요해요.” <대상자 4,5>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연계 사업 중요성과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유관기관은 신고의무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유관기관 연계 사업은 신고율과 연결된다. 따라서 서울시 차원의 지역사회 기관 연계 강화를 서울시가 총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관기관에서 얼마나 신고했는지에 따른 차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주로 병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기관이 많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대상자 10>

“일을 하다보면 유관기관이 신고를 많이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그 기관이랑 연계해서

업무했느냐가 중요할 거 같아요. 유관기관은 신고의무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유관기관과 업무를 같이 수행해보니 만족도가 높으면 신고가 많아져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인 대상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유관기관 대상의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대상자 7>

“노원처럼 공공에서 직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연계하거나 활용하는데 장점이 있어요.” <대상자 8>

- 아동학대는 가해도 신고도 인식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실제로 신고가 많은 시기는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이거나 혹은 언론에 노출이 대 규모로 이루어졌을 때이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홍보, 예방사업을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할 수 없는 사업을 지자체가 수행해야 한다.

“시 차원에서 대중행사를 같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의 달이나 아동학대 예방주간에 행사하는 하나의 기관에서 구와 협력해서 하는 것과 서울시 전체가 모여서 계획해서 하는 건 좀 다를듯해요. 서울시만의 브랜드네임을 가지고 큰 행사를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상자 7>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방송 매체 활용이 필요하고, 유튜브나 SNS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대상자 4,5>

“통상적으로 통계가 많이 올라가는 달은 4~5월, 9월이에요. 5월은 예방활동, 교육활동 활발하고 언론 노출도 많아요. 홍보가 많이 돼요. 9월은 학교체계나 신고의무자의 신고 관심도가 증가해요. 언론에 노출되면 신고가 들어오는 건 맞지만 반드시는 아니에요. 11월도 언론노출이 많이 되지만 신고는 많지 않아요. 노출이 얼마나 대규모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 한 것 같아요. 5월은 언론과 각 주체가 많이 하지만 11월은 5월 정도는 아니에요. 홍보를 통해 신고가 증가한다는 건 상관관계가 있지만 시거나 매체가 중요해요.” <대상자 8>

“자체 예산을 통한 교육의 확대가 어렵고 양질의 교재를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교육 교재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싶어요.” <대상자 8>

“신고의무자나 기타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을 해왔고, 어린이날이나 학대예방주간 등

에 구차원의 큰 규모의 캠페인을 하다 보니 효과가 상승했어요.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 같아요.” <대상자 9>

⑧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수단인 신고의 중요성

□ 현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은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 발견이 가능하다. 아동학대 차등대응 시스템이 제안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신고는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통로이다. 이에 면접 대상자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재차 강조한다. 신고는 아동을 지켜주는 안전망이다. 아동학대 신고는 사례관리로 대체될 수 없는 부분이며 신고의무자 보호, 신고를 위한 아동학대 인식 강화, 신고 체계와 절차의 간소화, 신고 과정에서의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일선 기관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판단 전문성 등을 총체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신고를 빨리하는 거예요. 학대발굴은 신고 없는 안 돼요.” <대상자 11>

“지금 체계에서는 발견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신고뿐이에요.” <대상자 6>

“처리자의 성향에 따라 ‘학대로 접근하느냐’, ‘보호필요아동으로 접근하느냐’는 달라져요. 아동학대는 범죄로 생각하고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으며, 처리방법이 없어서 지방 같은 경우 학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대상자 4,5>

“관련 기관에서 관리를 하다가 사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넘기는 경우가 대다수 있어요. 그런 경우 개입이 더 난해하죠.” <대상자 10>

“방임을 예방하고 양육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생명 지키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안전, 생명을 지키고 모니터링하고 가족 기능회복해서 성장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동학대 정책 중 해당 사항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상자 7>

2)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⁹⁾

①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율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대상 면접조사에서 서울시의 공공 사례관리가 신고율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보류적인 입장이거나 회의적인 편이었다. 즉, 서울의 공공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학대 위기도가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의 비가시성이 높은 대도시 특성을 감안해야 하며 아동학대 민감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암수범죄화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즉, 아동학대의 가시성의 차이일 뿐이라는 의견이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대상 조사에서 서울시의 아동학대가 심각도 측면에서 강력범죄 비율이 낮은 편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과도 연결된다. 즉 아동학대의 건수가 줄어들었다기 보다 아동학대의 종류와 성격이 다르거나 변화하여 타시도에 비해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공 사례관리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아동학대 신고(발견)이 더욱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는 학대로 판정 될 경우 반드시 신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가정 하에 성립한다. 현재 아동학대가 공공 영역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신고율을 높이는 것이 발견율을 높이는 수단이다. 사례관리 담당자가 학대 사례 발견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는 공식적인 아동학대 발견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사례관리 담당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교육, 자원연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 활용 등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서비스 대상자와의 관계로 인해 신고에 부담을 느끼기는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차등적 아동보호 체계가 제안된 바 있다. 즉 아동학대 심각도에 따라서 ▲신고와 조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욕구확인 서비스 전달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원화하여 차등적인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9) 전문가 조사는 국내 학계 전문가(아동학대, 사회복지) 6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기능 강화 및 역할에 대한 의견 그리고 ▲서울시 공공 사례관리 인프라가 아동학대 신고에 미친 영향과 서울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

②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의 역할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지자체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향후 심층사례관리에 집중해야 하며, 예방사업은 시도 지자체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자체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예방사업을 기획하고 주관해야 하며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프로그램(가정 및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대시민 홍보를 위해 언론을 활용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예방사업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심층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한다. 지자체가 예방사업을 주도할 때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예방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주체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시민(양육자, 아동, 지역사회 구성원 일반) 대상의 1차 예방사업은 이들과 일상 속에서 긴밀하게 접촉하는 일선 기관(학교, 어린이집,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담당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위험군에 대한 2차, 3차 예방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제안은 다음과 같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심층 사례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지자체가 인력이나 노하우 측면에서 아직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예방사업을 수행하되, 지자체는 관련 기관을 연계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어떤 체계를 구축하든 서울시는 관련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예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치구 단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조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자치구별로 1대 1 매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소결

아동학대 신고는 현재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신고의 방법과 경로는 인지신고, 신고의무자의 신고, 112를 통한 신고 등 다양하다. 신고가 되지 않으면 행정상 아동학대는 발견되지 않으며 발견되지 않으면 공공에서 아동학대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국내 아동학대 발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서울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2016까지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신고율이 2017년부터 서울시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동학대 신고율이 정체 된다는 것은 아동학대 발견율이 상승하기 어렵다는 점과 연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아동학대 민감도 상승으로 아동학대가 비가시적으로 그 특성이 변화하였고 암수범죄화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이전 단계의 공공 사례관리가 강화됨으로써 서울시가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학대 위기도를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그리고 각종 중복학대 등으로 구분되는데 최근 정서학대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방임 사례는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례 유형을 자치구별로 면밀히 분석할 경우 서울시 공공 사례관리의 성과와 역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동학대 민감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발견율이 상승할 필요가 있는 만큼,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즉,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로 이루어지는 대응 체계 외에 사례관리를 아동학대 관리 체계 안으로 연계하는 방안이다. 아동학대가 신고 되기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노출되는 위기도는 상이하며 이는 아동학대 신고 결정 요인이 되기도 하고 신고 이후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는 법적 개입이 시작되는 절차이기에 신고자가 부담감을 지니게 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 역시 필요하다.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교육과 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향후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본 조사에서 강조되었으며, 아동학대 신고가 발견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일선 경찰(지구대, 수사관, APO)과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

차원의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돌봄 및 교육 기관 중심의 신고의무 강화와 시민의 아동학대 인식개선 그리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IV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정책 방향

1. 아동학대 홍보와 인식개선
2. 아동학대 발견을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3. 신고·조사와 공공 사례관리 서비스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정책 방향

1. 아동학대 홍보와 인식개선

아동학대 발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에서 아동학대라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아동학대 규정 범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사회 변화에 따라 그 성격과 유형이 변화해 가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아동 존중 의식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먼저,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2020년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되어 체벌 금지가 법제화 되었으나 2019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여전히 신체적 체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¹⁰⁾. 예방 체계 정립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를 향상시키고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발견율 제고를 위한 신고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양육 지원 프로그램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신고율이 줄었다는 것이 아동학대가 줄었다는 지표가 되기는 어려우며 학대에 해당하지만 개인 인식에 따라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민감도와 학대 유형, 학대 심각도 등이 신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대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아동학대 추세가 바뀌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신고율 높이기 위해 지정하기 시작한 신고의무자의 범위의 적절성, 이들에 대한 교육과 신고자 보호의 충분성 역시

10) 2019년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자는 신체적 체벌에 대해 부모의 생각은 필요하다 13.4%, 불필요하다 59.9%, 모르겠다 26.8%로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으나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함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조사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5월에 대대적으로 아동학대 홍보가 진행되며 이 때 신고율이 올라간다는 점이었다. 즉, 시민들의 인식과 신고율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대도시의 지역사회 내 약화된 공동체성이 신고율 하락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관련 기관 종사자의 지적이 있었다. 신고의 중요성, 신고 의무에 대한 자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시민의식 강화가 필요하며 가시적으로 심각도가 높은 학대 범죄 외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강화되어야 한다. 발견율과 신고율 제고를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자치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인식개선 홍보 사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배포하는 각종 키트나 현물 지원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일상에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일 필요도 있다. 시차원의 인식개선과 구와 지역에서는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2. 아동학대 발견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 대상은 신고의무자, 부모, 일반인을 포괄하며 신고의무자교육은 신고의 필요성, 학대유형, 학대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해진 인력과 예산 내에서 사례관리 기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예방교육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아동학대 민감도와 발견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며 이를 위해 아동 연령대와 특성별로 효과적인 발굴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건강검진 담당 의사에 대한 아동학대 교육과 인식개선 그리고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배정하는 가정방문 확인 필요 사례를 동 단위 공무원이 모두 확인하도록 강제력을 갖춰야 하며 동 단위 공무원의 아동학대 민감성 강화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공공 사례관리사와 일선 경찰의 정확한 아동학대 판단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매우 중요한데 이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고의무자 직군이 속한 기관의 장들에 대한 별도 의무교육 실시를 강화하는 것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학대 행위에 대한 민감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학대 발견 시 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다양한 주체의 교육은 양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질적으로 통합 관리될 필요성도 있다. 또한 좋은 콘텐츠는 확산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교육이 통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이것을 시민들이 적절하게 선택하여 습득하는 정보공개와 정보 접근성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

즉 교육은 아동 당사자, 양육자, 경찰, 공공 사례관리사, 공무원, 돌봄·교육 기관을 포함한 신고의무자 직군 그리고 시민 일반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혹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의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육 주관 이 필요하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기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교육은 직군과 대상별로 차등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즉, 일반 시민 대상의 1차 예방 및 신고 교육과 학대 피해 아동, 고위기 아동과 관련된 교육 혹은 전문교육의 제공 대상을 다각화할 수 있다. 교육 종류는 다양해야 한다. 신고 방법 교육 뿐 아니라 현재 일부 선택적으로 진행되는 양육교육, 소통교육 등 그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특정연령대 이상 아동 당사자 대상의 아동학대 교육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당사자 신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이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직간접적인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아동이 스스로 성 학대 지식을 사전 제공 받은 경우 태도와 행동 변화에 큰 효과 크기를 보였다. 아동 대상 교육은 발견과 예방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이연규·김가은, 2019).

교육 내용은 신고 방법, 신고 과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저수준 해석이 고수준 해석보다 신고 행위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아동학대 신고를 “왜 해야하는지”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고수준 해석) “어떻게 신고를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해석을 해야 신고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고혜

인·김성봉, 2019a). 즉 아동학대 신고 교육과 홍보에서도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주는 것이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신고 결과보다 신고 과정과 방법 자체에 주목한 교육이 행동 실행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신고자 보호 조치를 지자체에서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신고건에 대한 아동학대 판단 및 분리 시 전문성 있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신고 이후 아동학대가 아닐 지라도 지원이 필요한 것이 발견된 가정에 적절한 지원이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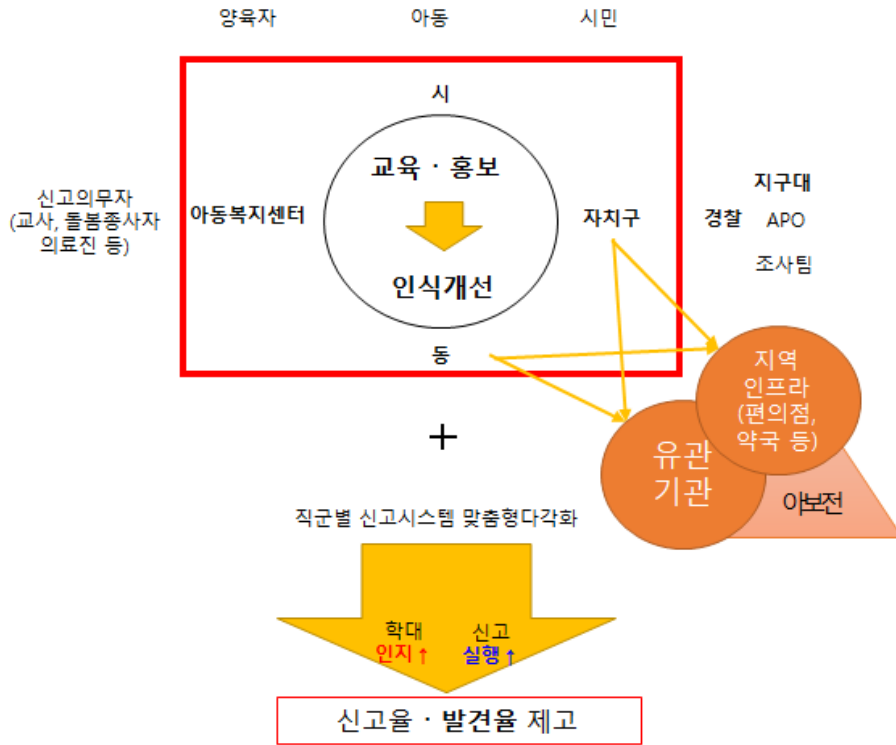
3. 신고·조사와 공공 사례관리 서비스

서울시의 아동학대 증감에 대한 명확한 현황과 공공 사례관리의 성과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와 발견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서울시 자치구 단위의 신고율-발견율, 대응체계, 복지인프라 격차를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발견율 격차가 존재하는데 만약 서울시의 공공 사례관리가 아동학대 위기도를 낮추는 것에 기여했다면, 찾동 사업과 복지인프라가 특정 자치구에서 위기도 감소에 효과를 보였는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아동학대 예방은 아동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신고·조사와 공공 사례관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아동학대가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신고율 제고와 이를 위한 시민의 민감도 향상 그리고 복지인프라 확대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즉, 아동학대 예방 체계 내에서 신고 체계와 복지 체계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학교, 어린이집, 의사 등 기관별로 개별 종사자들이 직접 신고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이들이 학대 의심 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기관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의사 직군의 경우 병원 내 기존 질병코드 입력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학교나 어린이집 등은 종사자가 신고 이전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비공식 상담을 받거나 알릴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러한 신고 전 심리적 완충지 설정을 통해 신고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다. 신고번호 112 일원화와 신고전 상담 단계 다각화는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접근으로 보인다. 모든 과정에서 아동복지센터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자치구, 동, 그리고 민간과 공공과 경찰이 모두 협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림 IV-1】 서울시¹¹⁾ 아동학대 예방 체계(안)



본 연구는 서울시의 신고율이 전국 및 타 지자체 신고율 추세와 다른 원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전국과 타 지자체와 동일한 문제점(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전체 신고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 등)은 제외하고 서울시 특성을 주로 다루었지만 아동학대 예방과 발견을 제고를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 이웃과 주민의 신고, 신고행위 결정과 판단시 개인의 부담감,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벗어났지만 향후 이러한 신고 영향요인 전반을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11) 서울시 아동학대대응팀 신설(2021.01). 아동학대예방 협의체 운영: 보건복지부, 경찰청, 교육청, 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계 등

참고문헌

- 강동욱(2019), 한국의 아동학대의 현황 및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제도적 대응에 관한 고찰. 아동보호연구 4권 2호. 133-194.
- 강지영(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의 아동학대사례 판단 기준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7권 1-33.
- 고혜인, 김성봉(2019a),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학대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해석수준. 감성과학 22권 2호. 3-16.
- 고혜인, 김성봉. (2019b).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그리고 실행의도의 상호작용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학연구, 30(3), 331-349.
- 김은정(2016),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순권(2019),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 보건복지부(2019),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 이연규, 김가은. (2019).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의 통합적 고찰.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6(1), 81-92.
- 이천현(2018).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소고.. 소년보호연구. 31권 1호. 157-186.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개입절차”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korea1391.go.kr/new/page/work_system.php, (2020-11-11 방문)
- 정선영(2019). 아동학대 과소신고(underreporting)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학대 사례와 신고관련 특성. 아동과 권리 23권 2호. 167-187.
- Fujita, K., Eyal, T., Chaiken, S., Trope, Y., and Liberman, N. 2008.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near and distant objec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3), 562-572.
- VanBergeijk, E. O., 2000. Designated Reporter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 New York City Scho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Abstract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에 미치는 요인 탐색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율이 오르지 않는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이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에 미치는 요인 즉 아동학대 유형, 공공 사례관리 인프라, 서울시 아동학대 특성,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의 역할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율 현황 분석과 향후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과 관련 기관 종사자 11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국내 아동학대 학계 전문가 6인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서울시 혹은 해당 권역의 아동학대 신고율 추이 변화의 특성을 질문하고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신고율이 반드시 올라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와 신고율 목표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아동학대 신고와 발견율 제고를 위한 자원 연계필요성, 서울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발견율 제고를 위한 신고 홍보 및 교육 지원 정책 개선 방향과 아동학대 신고, 조사 그리고 공공 사례관리를 포괄하는 아동학대 예방 체계 내에서의 아동학대 신고체계와 복지체계의 긴밀한 협업을 제안하였다.

Abstract

Study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Reporting Child Abuse in Seoul

Eeh-Eun Song¹²⁾

This study explores the reasons why the report rate on child abuse does not increase in Seoul, examin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porting of child abuse through the types of child abuse, public case management infrastructure, characteristics of child abuse, and roles of the Child Protection Agency and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To analyze the report rate of child abuse and to derive future policy directions, the study conducts interviews with the head and the eleven employees of the Child Protection Agency in Seoul. Also, the study collects six opinions from academic experts on child abuse in Korea. The study investigates characteristics of the trend of child abuse reporting rate in Seoul and each region,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report of child abuse from the interview. Also, based on the justification that the report rate should be increased and on the opinions on the target report rate, we investigate the need for the link with resources, the rol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agencies to increase the report rate on child abuse and the detection rate.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we propose a direction to promote child abuse reports and to improve child abuse education support policies in order to improve the child maltreatment victimization rate. Besides, we suggest a close collaboration between the child abuse reporting system and the welfare system within the child abuse prevention system that encompasses public case management.

12) Department of Policy Research,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부 록

[부록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유형별 신고건수(2016)

[부록 2] 아동학대 비신고의무자 유형별 신고건수(2016)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유형별 신고건수(2017)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부록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유형별 신고건수(2016)

(단위: 건)

| 기관명 | 자치구 | 신고의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중·고교 직원 | 이동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 장애편 인 복지 시설 종사자 | 유치원·유치원 교사 | 유치원·교직원·강사 | 소방대원 | 소방대원 | 상매대 한부모가족 상담소 복지 시설 종사자 | 기정 폭력 상담소 복지 시설 종사자 | 사회 복지 상담 전문 공무원 | 가정 위탁 센터 공무원 | 가정 복지 상담 전문 공무원 | 건강 관리 지원 센터 종사자 |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 상피해 보호 시설 종사자 | 응급 구조사 | 의료 기사 | 청소년 보호 센터 재활 센터 종사자 | 장년 보건 센터 종사자 |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 지원 인력 | 취약 계층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종사자 | 이동 상피해 보호 종합 지원 센터 종사자 | 성인 교육 피해자 종합 지원 센터 종사자 | 유아 복지 종합 입양 기관 소개 | | |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14 | 2 | 3 | 0 | 0 | 2 | 0 | 0 | 0 | 27 | 0 | 20 | 0 | 0 | 1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70 |
| | 송파구 | 10 | 3 | 1 | 0 | 3 | 0 | 0 | 0 | 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1 |
| | 강동구 | 8 | 7 | 0 | 0 | 0 | 4 | 1 | 0 | 0 | 2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4 | |
| | 서초구 | 7 | 0 | 1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 | |
| | 동작구 | 6 | 4 | 0 | 0 | 0 | 0 | 0 | 0 | 0 | 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4 | |
| 관악구 | 20 | 3 | 2 | 0 | 0 | 0 | 0 | 0 | 0 | 7 | 0 | 0 | 0 | 0 | 1 | 0 | 0 | 1 | 0 | 2 | 1 | 0 | 0 | 0 | 0 | 0 | 39 | | |
| 소계 | 65 | 19 | 7 | 0 | 3 | 2 | 4 | 1 | 1 | 0 | 2 | 44 | 0 | 20 | 1 | 0 | 2 | 0 | 1 | 0 | 2 | 1 | 0 | 1 | 0 | 0 | 177 | | |
| 동부 | 성동구 | 19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28 | |
| | 동대문구 | 19 | 0 | 1 | 0 | 1 | 1 | 0 | 0 | 6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7 | | |
| | 광진구 | 19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2 | 0 | 0 | 1 | 0 | 0 | 31 | | |
| | 중구 | 5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15 | |
| | 노원구 | 29 | 0 | 1 | 0 | 0 | 0 | 0 | 1 | 0 | 6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5 | |
| 중랑구 | 43 | 1 | 0 | 0 | 2 | 0 | 0 | 0 | 0 | 4 | 0 | 0 | 0 | 0 | 7 | 1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66 | | |
| 소계 | 134 | 1 | 3 | 0 | 3 | 1 | 4 | 1 | 0 | 2 | 18 | 0 | 0 | 0 | 11 | 2 | 0 | 0 | 3 | 2 | 0 | 0 | 1 | 36 | 0 | 0 | 222 | | |
| 강서 | 강서구 | 28 | 2 | 5 | 0 | 1 | 0 | 2 | 0 | 1 | 11 | 0 | 1 | 4 | 0 | 2 | 0 | 0 | 0 | 2 | 0 | 1 | 0 | 7 | 1 | 0 | 0 | 69 | |
| | 양천구 | 37 | 4 | 4 | 0 | 4 | 0 | 0 | 0 | 13 | 0 | 3 | 0 | 0 | 2 | 0 | 0 | 0 | 0 | 0 | 0 | 0 | 0 | 2 | 0 | 0 | 69 | | |
| | 소계 | 65 | 6 | 9 | 0 | 5 | 0 | 2 | 0 | 24 | 0 | 4 | 4 | 0 | 4 | 0 | 4 | 0 | 0 | 2 | 0 | 1 | 0 | 7 | 3 | 0 | 138 | | |

| 기관명 | 자치구 | 신고의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중·고교 이로인 직원 | 장애훈약 아동복지 시설 증사자 | 장애인 복지 시설 증사자 | 유치원 교직원 강사 | 유치원 교직원 강사 | 소방 구급 대원 | 성매매 피해 시설 상담소 증사자 | 성매매 피해 시설 상담소 증사자 | 가정 폭력 상담소 보호 시설 증사자 | 가정 위탁 시설 증사자 |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 사회 복지 시설 증사자 |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증사자 |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증사자 |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 가정 위탁 시설 증사자 |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 가정 폭력 상담소 보호 시설 증사자 | 성폭력 피해 보호 시설 증사자 | 응급 구조사 기사 | 의료 기사 | 청소년 보호 센터 청소년 생활 센터 증사자 | 청소년 보호 센터 청소년 생활 센터 증사자 | 정신 보건 센터 증사자 | 아이 돌보미 증사자 |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인력 |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증사자 | 성폭력 피해 통합 지원 센터 증사자 |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증사자 | 입양 기관 소개 증사자 | | | |
| | 은평구 | 36 | 2 | 2 | 0 | 2 | 1 | 0 | 0 | 0 | 4 | 0 | 0 | 1 | 0 | 0 | 16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14 | 0 | 0 | 0 | 0 | 79 |
| 은평 | 중로구 | 7 | 1 | 4 | 0 | 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2 | 0 | 0 | 0 | 0 | 22 |
| | 강북구 | 24 | 3 | 2 | 0 | 0 | 0 | 0 | 0 | 0 | 5 | 0 | 0 | 0 | 0 | 0 | 3 | 1 | 0 | 0 | 0 | 0 | 5 | 2 | 0 | 0 | 0 | 0 | 1 | 0 | 0 | 0 | 0 | 46 |
| | 소계 | 67 | 6 | 8 | 0 | 7 | 1 | 0 | 0 | 0 | 9 | 0 | 0 | 1 | 0 | 0 | 21 | 1 | 0 | 0 | 0 | 6 | 3 | 0 | 0 | 0 | 0 | 17 | 0 | 0 | 0 | 0 | 147 | |
| | 구로구 | 12 | 3 | 2 | 0 | 8 | 0 | 0 | 0 | 0 | 2 | 5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0 | 0 | 0 | 0 | 35 | |
| 영등포 | 금천구 | 10 | 3 | 1 | 0 | 1 | 0 | 0 | 0 | 0 | 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2 | 0 | 0 | 0 | 0 | 23 | |
| | 영등포구 | 16 | 1 | 0 | 0 | 0 | 0 | 0 | 0 | 0 | 2 | 0 | 0 | 0 | 0 | 0 | 2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2 | |
| | 소계 | 38 | 7 | 3 | 0 | 9 | 0 | 0 | 0 | 0 | 2 | 12 | 0 | 0 | 0 | 0 | 3 | 0 | 0 | 0 | 0 | 2 | 0 | 0 | 0 | 0 | 4 | 0 | 0 | 0 | 0 | 80 | | |
| 성북 | 성북구 | 19 | 1 | 12 | 0 | 6 | 0 | 0 | 0 | 0 | 5 | 0 | 0 | 1 | 0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47 | | |
| | 도봉구 | 17 | 1 | 4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3 | 0 | 0 | 0 | 0 | 0 | 1 | 0 | 0 | 0 | 1 | 0 | 0 | 0 | 0 | 28 | | |
| | 소계 | 36 | 2 | 16 | 0 | 6 | 0 | 0 | 0 | 0 | 6 | 0 | 0 | 1 | 0 | 5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2 | 0 | 0 | 0 | 0 | 75 | | |
| 마포 | 마포구 | 23 | 1 | 0 | 0 | 0 | 0 | 0 | 0 | 0 | 1 | 8 | 0 | 0 | 0 | 0 | 2 | 0 | 0 | 0 | 0 | 1 | 0 | 0 | 0 | 0 | 1 | 2 | 0 | 0 | 0 | 39 | | |
| | 용산구 | 11 | 5 | 0 | 0 | 0 | 0 | 0 | 0 | 0 | 1 | 3 | 0 | 0 | 0 | 0 | 1 | 0 | 0 | 0 | 0 | 1 | 0 | 1 | 0 | 0 | 0 | 0 | 0 | 0 | 0 | 23 | | |
| 마포 | 서대문구 | 21 | 1 | 5 | 0 | 1 | 0 | 0 | 0 | 0 | 3 | 0 | 0 | 0 | 0 | 0 | 5 | 0 | 0 | 0 | 0 | 2 | 2 | 0 | 0 | 0 | 3 | 0 | 0 | 0 | 0 | 44 | | |
| | 소계 | 55 | 7 | 5 | 0 | 1 | 0 | 1 | 0 | 0 | 2 | 14 | 0 | 0 | 0 | 0 | 8 | 0 | 0 | 0 | 0 | 4 | 2 | 1 | 0 | 1 | 5 | 0 | 0 | 0 | 0 | 106 | | |
| 동남권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 2] 아동학대 비신고의무자 유형별 신고건수(2016)

(단위: 건)

| 기관명 | 자치구 | 비신고의무자 | | | | | | | | | | | 계 | |
|-------|------|--------|--------------|------|-----|------|------------|-----|-------------------|------|----|---------------------|----|-----|
| | | 이동본인 | 부모 | 형제자매 | 친인척 | 이웃친구 | 경찰 | 종교인 |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 낯선사람 | 익명 |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 | 기타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5 | 25 | 1 | 6 | 7 | 3 | 0 | 0 | 3 | 4 | 0 | 1 | 55 |
| | 송파구 | 8 | 16 | 0 | 2 | 51 | 3 | 0 | 3 | 0 | 2 | 0 | 3 | 88 |
| | 강동구 | 13 | 19 | 2 | 6 | 9 | 2 | 0 | 2 | 0 | 12 | 0 | 7 | 72 |
| | 서초구 | 4 | 11 | 1 | 0 | 2 | 13 | 0 | 0 | 1 | 1 | 0 | 0 | 33 |
| | 동작구 | 2 | 6 | 0 | 3 | 8 | 0 | 0 | 1 | 0 | 2 | 0 | 0 | 22 |
| | 관악구 | 29 | 25 | 4 | 18 | 28 | 3 | 0 | 1 | 1 | 5 | 0 | 2 | 116 |
| | 소계 | 61 | 102 (101) | 8 | 35 | 105 | 24 (25) | 0 | 7 | 5 | 26 | 0 | 13 | 386 |
| 동부 | 성동구 | 9 | 17 | 1 | 0 | 3 | 1 | 0 | 22 | 5 | 1 | 0 | 1 | 60 |
| | 동대문구 | 3 | 18 | 1 | 3 | 5 | 10 | 0 | 24 | 4 | 2 | 3 | 2 | 75 |
| | 광진구 | 28 | 39 | 12 | 0 | 8 | 27 | 0 | 22 | 5 | 3 | 4 | 4 | 152 |
| | 중구 | 5 | 6 | 2 | 1 | 8 | 11 | 0 | 7 | 1 | 0 | 0 | 0 | 41 |
| | 노원구 | 35 | 36 | 1 | 1 | 17 | 23 | 1 | 27 | 6 | 2 | 8 | 4 | 161 |
| | 중랑구 | 11 | 19 | 3 | 1 | 17 | 6 | 0 | 32 | 5 | 0 | 3 | 0 | 97 |
| 강서 | 소계 | 91 | 135 | 20 | 6 | 58 | 78 | 1 | 134 | 26 | 8 | 18 | 11 | 586 |
| | 강서구 | 12 | 38 | 1 | 3 | 19 | 4 | 0 | 23 | 6 | 2 | 1 | 16 | 125 |
| | 양천구 | 12 | 20 | 2 | 3 | 13 | 2 | 0 | 18 | 3 | 0 | 1 | 6 | 80 |
| | 소계 | 24 | 58 | 3 | 6 | 32 | 6 | 0 | 41 | 9 | 2 | 2 | 22 | 205 |

| 기명명 | 비신고의무자 | | | | | | | | | | | 계 | | |
|-----|--|------|--------------|------|-----|------|----|-----|-------------------|------|----|----|---------------------|--------------|
| | 자치구 | 이등본인 | 부모 | 형제자매 | 친인척 | 이웃친구 | 경찰 | 종교인 |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 낙신사람 | 익명 | |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 기타 |
| 은평 | 은평구 | 60 | 52 | 10 | 3 | 31 | 10 | 0 | 41 | 24 | 3 | 14 | 4 | 252 |
| | 종로구 | 3 | 6 | 0 | 0 | 8 | 1 | 0 | 8 | 0 | 0 | 3 | 2 | 31 |
| | 강북구 | 10 | 19 | 0 | 5 | 13 | 4 | 1 | 31 | 5 | 4 | 5 | 0 | 97 |
| | 소계 | 73 | 77 | 10 | 8 | 52 | 15 | 1 | 80 | 29 | 7 | 22 | 6 | 380 |
| 영등포 | 구로구 | 15 | 244 | 1 | 6 | 5 | 7 | 0 | 30 | 8 | 0 | 5 | 8 | 329 |
| | 금천구 | 7 | 12 | 4 | 1 | 13 | 0 | 0 | 7 | 3 | 0 | 3 | 4 | 54 |
| | 영등포구 | 6 | 27 | 1 | 6 | 10 | 2 | 0 | 18 | 1 | 0 | 1 | 4 | 76 |
| | 소계 | 28 | 283 (284) | 6 | 13 | 28 | 9 | 0 | 55 | 12 | 0 | 9 | 16 | 459 (460) |
| 성북 | 성북구 | 15 | 19 | 0 | 5 | 9 | 1 | 0 | 39 | 2 | 4 | 0 | 5 | 99 |
| | 도봉구 | 25 | 31 | 3 | 2 | 23 | 12 | 0 | 46 | 3 | 2 | 1 | 7 | 155 |
| | 소계 | 40 | 50 | 3 | 7 | 32 | 13 | 0 | 85 | 5 | 6 | 1 | 12 | 254 |
| | 마포구 | 8 | 36 | 4 | 3 | 10 | 8 | 0 | 15 | 3 | 0 | 0 | 6 | 93 |
| 마포 | 용산구 | 10 | 17 | 1 | 1 | 8 | 6 | 0 | 13 | 0 | 2 | 2 | 1 | 61 |
| | 서대문구 | 11 | 27 | 2 | 6 | 6 | 5 | 0 | 8 | 1 | 0 | 0 | 4 | 70 |
| | 소계 | 29 | 80 | 7 | 10 | 24 | 19 | 0 | 36 | 4 | 2 | 2 | 11 | 224 |
|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 | | | | | | | | | | | |
| 동남권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부 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부록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유형별 신고건수(2017)

(단위: 건)

| 기연명 | 자취구 | 신고의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중·고교 직업 직원 | 이로 기사 | 아동·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 유치원· 교직원· 강사 | 유치원· 교직원· 강사 | 학원 강사 | 소방 구급 대원 | 성매매 피해 시설 상임소 종사자 |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종사자 | 가정 폭력 상담소 보호 시설 종사자 | 가정 폭력 상담 공무원 종사자 |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종사자 |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 가정 위탁 지원 센터 종사자 | 가정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종사자 |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종사자 | 성폭력 피해 보호 시설 종사자· 통합 지원 센터 종사자 | 응급 구조사 종사자 | 청소년 보호 시설 단체 종사자 | 청소년 보호 시설 단체 종사자 | 아이 돌보미 종사자 |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인력 |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종사자 | 입양 기관 종사자 | 스케 | | | | |
| 강남구 | 17 | 1 | 6 | 0 | 1 | 0 | 0 | 0 | 0 | 0 | 0 | 13 | 2 | 0 | 0 | 0 | 0 | 0 | 1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43 |
| 송파구 | 21 | 4 | 1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8 |
| 강동구 | 23 | 1 | 3 | 0 | 0 | 0 | 0 | 0 | 0 | 0 | 0 | 7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5 | |
| 서초구 | 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
| 동작구 | 19 | 1 | 0 | 0 | 1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0 | 0 | 0 | 0 | 0 | 0 | 0 | 25 | |
| 관악구 | 37 | 1 | 2 | 0 | 1 | 0 | 0 | 0 | 0 | 0 | 0 | 1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2 | 0 | 3 | 0 | 0 | 0 | 57 | | |
| 소계 | 126 (124) | 8 (9) | 12 (26) | 0 | 4 | 1 | 0 | 0 | 0 | 0 | 0 | 32 | 3 | 0 | 0 | 0 | 0 | 0 | 1 | 1 | 1 | 3 | 3 | 0 | 3 | 0 | 0 | 0 | 0 | 198 (211) | | |
| 성동구 | 14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0 | 0 | 0 | 0 | 18 | | |
| 동대문구 | 24 | 5 | 0 | 1 | 1 | 0 | 0 | 0 | 0 | 0 | 2 | 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0 | 0 | 0 | 0 | 38 | | |
| 광진구 | 32 | 2 | 1 | 0 | 3 | 0 | 0 | 0 | 0 | 0 | 0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 | 0 | 0 | 0 | 0 | 0 | 43 | | |
| 중구 | 8 | 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2 | | |
| 중랑구 | 36 | 1 | 0 | 0 | 0 | 0 | 0 | 0 | 0 | 0 | 5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3 | 0 | 0 | 0 | 0 | 0 | 47 | | |
| 노원구 | 22 | 12 | 0 | 1 | 0 | 0 | 0 | 0 | 0 | 0 | 5 | 1 | 0 | 0 | 0 | 0 | 0 | 0 | 1 | 6 | 0 | 8 | 0 | 0 | 0 | 0 | 0 | 0 | 0 | 56 | | |
| 소계 | 136 | 22 | 2 | 2 | 4 | 0 | 0 | 0 | 0 | 0 | 12 | 10 | 0 | 0 | 0 | 0 | 0 | 1 | 6 | 0 | 9 | 9 | 0 | 10 | 0 | 0 | 0 | 0 | 214 | | | |

| 기면명 | 저허구 | 신고의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중·고교 직원 | 이로 기사 | 장제인 복지 시설 봉사자 | 보육 교직원 강사 | 유치원 교직원 강사 | 하원 강사 | 소방 기관 대원 | 성매매 피해 상담소 봉사자 |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봉사자 | 가정 폭력 상담소 보호 시설 봉사자 |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봉사자 | 사회 복지 시설 공무원 봉사자 | 가정 위탁 지원 센터 봉사자 | 이동 복지 전담 공무원 봉사자 | 건강 기증 지원 센터 봉사자 |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봉사자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봉사자 | 성폭력 피해 보호 시설 봉사자 | 친구들 센터 봉사자 | 청년 시설 단체 봉사자 | 청년 보호 센터 | 아이 돌보미 센터 | 취업 계층 이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인력 | 육아 종합 지원 센터 | 입양 기관 봉사자 | 소계 | | |
| 강서 | 강서구 | 33 | 1 | 0 | 0 | 32 | 1 | 0 | 0 | 0 | 4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2 |
| | 양천구 | 25 | 3 | 0 | 0 | 0 | 0 | 0 | 0 | 6 | 2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1 | 0 | 0 | 0 | 0 | 0 | 0 | 48 |
| | 소계 | 58 | 4 | 0 | 0 | 36 | 1 | 0 | 0 | 0 | 10 | 3 | 0 | 0 | 0 | 0 | 0 | 1 | 0 | 0 | 0 | 1 | 0 | 0 | 0 | 0 | 0 | 120 (116) | |
| 은평 | 은평구 | 32 | 3 | 11 | 0 | 2 | 1 | 0 | 0 | 4 | 4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2 | 0 | 0 | 0 | 0 | 0 | 60 | |
| | 종로구 | 10 | 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2 | 0 | 0 | 0 | 0 | 0 | 17 | |
| | 강북구 | 37 | 1 | 0 | 0 | 1 | 0 | 0 | 0 | 1 | 0 | 0 | 0 | 0 | 1 | 0 | 0 | 0 | 2 | 0 | 4 | 1 | 0 | 0 | 0 | 0 | 0 | 48 | |
| 영등포 | 소계 | 79 (77) | 8 | 11 (1) | 0 | 3 | 1 | 0 | 0 | 4 | 5 | 0 | 0 | 1 | 1 | 0 | 0 | 3 | 0 | 0 | 8 | 1 | 0 | 0 | 0 | 0 | 0 | 125 (113) | |
| | 구로구 | 23 | 1 | 1 | 0 | 2 | 0 | 0 | 0 | 1 | 8 | 0 | 0 | 0 | 1 | 0 | 0 | 1 | 0 | 0 | 2 | 0 | 0 | 0 | 0 | 0 | 0 | 42 | |
| | 금천구 | 28 | 0 | 0 | 0 | 3 | 0 | 0 | 0 | 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0 | 0 | 3 | 0 | 0 | 41 | |
| 성북 | 영등포구 | 13 | 1 | 0 | 0 | 1 | 0 | 0 | 2 | 0 | 6 | 0 | 0 | 2 | 0 | 0 | 0 | 1 | 0 | 1 | 0 | 2 | 1 | 0 | 0 | 0 | 0 | 29 | |
| | 소계 | 64 | 2 | 1 | 6 | 0 | 0 | 2 | 1 | 19 (3) | 0 | 0 | 0 | 2 | 1 | 0 | 0 | 2 | 0 | 2 | 6 | 1 | 0 | 3 | 0 | 0 | 0 | 112 (114) | |
| | 성북구 | 27 | 4 | 1 | 0 | 1 | 0 | 0 | 0 | 16 | 1 | 0 | 0 | 0 | 0 | 0 | 0 | 1 | 0 | 0 | 2 | 2 | 0 | 0 | 0 | 0 | 0 | 55 | |
| 성북 | 도봉구 | 33 | 1 | 1 | 0 | 1 | 1 | 0 | 0 | 2 | 1 | 0 | 0 | 0 | 0 | 0 | 3 | 2 | 0 | 0 | 0 | 0 | 1 | 0 | 0 | 0 | 0 | 46 | |
| | 소계 | 60 (61) | 5 | 2 | 0 | 2 | 1 | 0 | 0 | 18 | 2 | 0 | 0 | 0 | 0 | 0 | 3 | 3 | 0 | 0 | 2 | 3 | 0 | 0 | 0 | 0 | 0 | 101 (102) | |

| 기관명 | 지지구 | 신고의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중·고교 직원 | 이동·의료인· 의료 기사 | 이동·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 유치원· 보육 교직원 강사 | 유치원· 교직원 강사 | 하원 강사 | 소방 구급 대원 | 성매매 피해 시설 상담소 종사자 |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종사자 | 가정 폭력 상담소 보호 시설 종사자 | 가정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종사자 |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 가정 위탁 지원 센터 종사자 | 이동 복지 진단 공무원 종사자 |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종사자 | 성폭력 피해 보호 시설 종사자· 통합 지원 센터 종사자 |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 청소년 보호 센터· 청소년 생활 센터 종사자 | 아동 보호 시설 종사자 | 취업 계층 이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인력 |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종사자 | 입양 기관 종사자 | 소계 | | |
| 마포 | 마포구 | 19 | 1 | 1 | 0 | 1 | 0 | 0 | 0 | 2 | 7 | 1 | 0 | 0 | 0 | 0 | 0 | 0 | 2 | 0 | 1 | 0 | 0 | 0 | 0 | 0 | 0 | 36 |
| | 용산구 | 14 | 0 | 0 | 6 | 0 | 0 | 0 | 1 | 1 | 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4 |
| | 서대문구 | 26 | 3 | 4 | 0 | 0 | 1 | 0 | 0 | 3 | 8 | 0 | 0 | 0 | 0 | 0 | 0 | 2 | 0 | 0 | 0 | 0 | 0 | 3 | 0 | 0 | 50 | |
| | 소계 | 59 | 4 | 5 | 0 | 7 | 1 | 1 | 0 | 1 | 6 (4) | 16 | 2 (1) | 0 | 0 | 0 | 0 | 2 | 2 | 0 | 1 | 0 | 3 | 0 | 0 | 0 | 110 (107) | |
| 동남 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이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부록 4] 아동학대 비신고의무자 유형별 신고건수(2017)

(단위: 건)

| 기관명 | 자치구 | 비신고의무자 | | | | | | | | | | | 기타 | 소계 | | | | |
|-------|------|--------------|--------------|------|----------|------------|------------|-----|-------------------|---------------------|-------------|------------|----|------------|--------------|-----|----|--------------|
| | | 이동본인 | 부모 | 형제자매 | 친인척 | 이웃친구 | 경찰 | 종교인 |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 이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 의료사회 복지사 | 낯선사람 | | | 익명 | | |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13 | 13 | 1 | 3 | 3 | 3 | 0 | 0 | 0 | 0 | 0 | 0 | 0 | 1 | 3 | 4 | 44 |
| | 송파구 | 14 | 29 | 0 | 1 | 5 | 0 | 0 | 0 | 0 | 0 | 0 | 2 | 1 | 0 | 1 | 5 | 58 |
| | 강동구 | 6 | 25 | 2 | 0 | 11 | 0 | 0 | 1 | 0 | 0 | 0 | 0 | 1 | 1 | 0 | 2 | 49 |
| | 서초구 | 3 | 18 | 1 | 3 | 7 | 1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34 |
| | 동작구 | 6 | 1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0 | 1 | 1 | 1 | 23 |
| | 관악구 | 13 | 41 | 1 | 0 | 3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4 | 1 | 73 |
| | 소계 | 55 (56) | 138 (141) | 5 | 7 (9) | 29 | 4 (6) | 0 | 1 | 4 | 3 | 13 (15) | 9 | 13 | 24 | 9 | 13 | 281 (291) |
| 동부 | 성동구 | 6 | 15 | 0 | 1 | 3 | 0 | 0 | 1 | 9 | 0 | 0 | 2 | 0 | 0 | 4 | 41 | |
| | 동대문구 | 34 | 28 | 0 | 6 | 12 | 4 | 0 | 1 | 24 | 0 | 0 | 4 | 2 | 3 | 118 | | |
| | 광진구 | 39 | 64 | 1 | 3 | 12 | 5 | 0 | 0 | 27 | 0 | 0 | 9 | 1 | 3 | 164 | | |
| | 중구 | 3 | 10 | 0 | 0 | 1 | 1 | 0 | 0 | 7 | 0 | 0 | 4 | 0 | 0 | 26 | | |
| | 중랑구 | 32 | 34 | 0 | 5 | 13 | 4 | 0 | 2 | 17 | 3 | 6 | 4 | 4 | 11 | 131 | | |
| | 노원구 | 50 | 46 | 2 | 5 | 23 | 1 | 0 | 1 | 21 | 0 | 6 | 2 | 3 | 160 | | | |
| | 소계 | 164 (163) | 197 (200) | 3 | 20 | 64 (65) | 15 | 0 | 5 | 105 | 3 | 31 | 9 | 24 (23) | 7 | 170 | | |
| 강서 | 강서구 | 21 | 69 | 4 | 9 | 23 | 14 | 0 | 5 | 11 | 0 | 7 | 0 | 7 | 170 | | | |
| | 양천구 | 32 | 35 | 1 | 1 | 20 | 6 | 0 | 3 | 73 | 3 | 3 | 0 | 2 | 179 | | | |
| | 소계 | 53 (54) | 104 | 5 | 10 | 43 (42) | 20 (18) | 0 | 8 | 84 | 3 | 10 (11) | 0 | 9 | 349 (348) | | | |

| 기관명 | 지치구 | 비신고의무자 | | | | | | | | | | | | | 기타 | 소계 |
|-----|---|------------|------------|------|-----|------------|----------|-----|-------------------|---------------------|-------------|----------|----|------------|--------------|----|
| | | 이동본인 | 부모 | 형제자매 | 친인척 | 이웃친구 | 경찰 | 종교인 |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 이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 의료사회 복지사 | 낙선사람 | 익명 | | | |
| 은평 | 은평구 | 36 | 68 | 2 | 11 | 26 | 8 | 0 | 1 | 81 | 0 | 1 | 0 | 18 | 252 | |
| | 종로구 | 4 | 10 | 1 | 0 | 1 | 0 | 0 | 0 | 19 | 0 | 3 | 0 | 3 | 41 | |
| | 강북구 | 27 | 18 | 3 | 2 | 13 | 3 | 0 | 3 | 64 | 0 | 4 | 1 | 7 | 145 | |
| 영등포 | 소계 | 67 | 96 (94) | 6 | 13 | 40 | 11 | 0 | 4 | 164 (163) | 0 | 8 | 1 | 28 (26) | 438 (433) | |
| | 구로구 | 7 | 30 | 0 | 3 | 1 | 1 | 0 | 4 | 14 | 0 | 2 | 0 | 1 | 63 | |
| | 금천구 | 18 | 10 | 2 | 3 | 3 | 3 | 0 | 0 | 24 | 0 | 0 | 7 | 0 | 70 | |
| | 영등포구 | 7 | 21 | 0 | 1 | 3 | 2 | 0 | 0 | 23 | 0 | 5 | 0 | 3 | 65 | |
| | 소계 | 32 | 61 (58) | 2 | 7 | 7 | 6 | 0 | 4 | 61 | 0 | 7 (8) | 7 | 4 (2) | 198 (194) | |
| 성북 | 성북구 | 12 | 30 | 1 | 0 | 8 | 2 | 0 | 1 | 51 | 0 | 3 | 0 | 8 | 116 | |
| | 도봉구 | 29 | 33 | 1 | 4 | 19 | 1 | 0 | 4 | 43 | 0 | 3 | 0 | 1 | 138 | |
| | 소계 | 41 | 63 (64) | 2 | 4 | 27 | 3 (4) | 0 | 5 | 94 (95) | 0 | 6 | 0 | 9 (10) | 254 (258) | |
| 마포 | 마포구 | 21 | 26 | 0 | 1 | 12 | 1 | 1 | 1 | 21 | 0 | 1 | 0 | 3 | 88 | |
| | 용산구 | 11 | 15 | 0 | 0 | 6 | 3 | 0 | 0 | 28 | 1 | 0 | 0 | 6 | 70 | |
| | 서대문구 | 11 | 33 | 3 | 3 | 8 | 3 | 0 | 2 | 25 | 0 | 2 | 1 | 9 | 100 | |
| 동남권 | 소계 | 43 (41) | 74 | 3 | 4 | 26 (25) | 7 | 1 | 3 | 74 | 1 | 3 (2) | 1 | 18 (17) | 258 (253) | |
| | 서울동남권이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야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이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유형별 신고건수(2018)

(단위: 건)

| | 신고의무자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초·중·고교 직원 | 의료인 기사 | 아동 복지 시설 증사자 | 장애인 복지 시설 증사자 | 유치원 교직원 ·강사 증사자 | 학원 및 교습소 증사자 | 소방 구급 대원 |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증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증사자 |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증사자 |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증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증사자 | 가정 사회 복지 시설 증사자 | 가정 위탁 시설 증사자 | 아동 복지 진단 공무원 증사자 |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증사자 |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증사자 |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증사자 |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증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증사자 | 응급 구조사 증사자 | | 청소년 보호 시설 및 단체 증사자 | 청소년 보호 시설 및 단체 증사자 | 청소년 보호 시설 및 단체 증사자 | 아이 돌보미 ·센터 증사자 | 통합 지원 센터 증사자 |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지원 센터 증사자 |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증사자 | 입양 기관 증사자 |
| 서울 | 701 | 41 | 34 | 7 | 20 | 10 | 2 | 6 | 0 | 4 | 5 | 30 | 0 | 0 | 14 | 2 | 1 | 1 | 6 | 0 | 25 | 18 | 0 | 9 | 1 | 0 | 937 |

[부록 6] 아동학대 비신고의무자 유형별 신고건수(2018)

(단위: 건)

| 비신고의무자 | | | | | | | | | | | | | | | |
|--------|------|-----|------|-----|------|----|-----|-------------------|---------------------|-------------|------|----|----|----|------|
| | 이동본인 | 부모 | 형제자매 | 친인척 | 이웃친구 | 경찰 | 종교인 |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 이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 의료사회 복지사 | 낯선사람 | 인명 | 법원 | 기타 | 소계 |
| 서울 | 456 | 860 | 51 | 66 | 211 | 25 | 7 | 90 | 523 | 5 | 54 | 20 | 0 | 94 | 2462 |

[부록 7] 신고의무자 규정 법률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2014. 9. 29.] [법률 제12341호, 2014. 1. 28., 제정]

최초 법 제정 시 신고의무자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5.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점입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72호, 2016. 5. 29., 일부개정]

신고의무자 조항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3719호, 2016. 1. 6., 타법개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172호, 2016. 5. 29., 일부개정] |
|---|---|
| <p>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p> <p>3. ~ 8. (생략)</p> <p>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p> <p>10. (생략)</p> <p>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p> <p>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p> <p>13. (생략)</p> <p>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p> <p>15.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p> <p>16. ~ 24. (생략)</p> <p><신 설></p> | <p>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p> <p>3. ~ 8. (현행과 같음)</p> <p>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p> <p>10. (현행과 같음)</p> <p>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p> <p>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p> <p>13.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p> <p>16. ~ 24. (현행과 같음)</p> <p>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p>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신고의무자 조항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172호, 2016. 5. 29., 일부개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
|--|--|
| <p>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 <p>1. ~ 16. (생략)</p> <p>17.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p> <p>18. ~ 25. (생략)</p> <p>③ (생략)</p> | <p>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 <p>1. ~ 16. (현행과 같음)</p> <p>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p> <p>18. ~ 2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타법개정]

신고의무자 조항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5255호, 2017. 12. 19., 일부개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타법개정] |
|---|---|
| <p>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 <p>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p> <p>2. ~ 25. (생략)</p> <p>③ (생략)</p> | <p>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 <p>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p> <p>2. ~ 2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087호, 2020. 3. 24., 일부개정]

신고의무자 조항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타법개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087호, 2020. 3. 24., 일부개정] |
|---|---|
| <p>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p> <p>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p> <p>9. (생략)</p> <p>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p> <p>11.·12. (생략)</p> <p>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p> <p><신설></p> <p>15. ~ 19. (생략)</p> <p>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p> <p>21. ~ 25. (생략)</p> <p>③ (생략)</p> | <p>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p> <p>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p> <p>9. (현행과 같음)</p> <p>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p> <p>11.·12. (현행과 같음)</p> <p>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p> <p>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p> <p>15. ~ 19. (현행과 같음)</p> <p>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p> <p>21. ~ 2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087호, 2020. 3. 24., 일부개정]

현재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 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에 미치는 요인 탐색

발행인 백미순
연구자 송이은
발행일 2020년 12월
인쇄처 (주)행복드림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대)
ISBN 979-11-91139-23-5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www.seoulwomen.or.kr
신고자의 신분과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